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28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8)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8)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2)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18.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3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3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4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8.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59. 긴급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8) 11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11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11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11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8) 11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2) 11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15
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15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15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5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23
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23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23
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24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4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4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24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3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3)	35
3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6
3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39
3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39
4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3)	39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39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39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39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9
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5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50
58.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50
59. 긴급현안질의	63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7개 위원회 소관 56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재제청 거부등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취득 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식 인수 주체에게 최소매수주식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할 것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3조의2제2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공개매수의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 제133조의2제2항 후단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을 더한 주식 수에서 전환사채 등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직후의 보유 주식 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최소매수주식수를 계산하도록 의무공개매수 사례에 맞추어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안 제133조의2제3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인 주식 취득과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간

의 논리적 정합성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같은 항 제3호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분씩 대체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주진우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박규택 위원님 이렇게 토론해 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억원 위원장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역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좀 남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분이 50% 초과한 대주주의 추가매수에는 이번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그것이 제외됐고 50% 초과 지분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은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공개매수가에 주식을 처분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 플러스 1로 두는 지금의 개정안보다도 좀 더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두는 안으로 심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이든 대주주의 지분이든 동등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 비율을 50%보다는 조금 더 두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위원장님, 누가 주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오너 주식 물량은 시장가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리고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기회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기업사냥꾼 같은 부도덕한 대주주가 와서 주가마저 하락한다면 같은 주식이 전혀 다른 가격이 되는 이중가격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3년 말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비율이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39%, 코스피 상장사는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투자자, 소액지분 주주, 지분이 더 많은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인수와 이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금융위,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꼼꼼하고 촘촘한 공개매수 절차 진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개매수 신고서가 아마 금융위에 접수가 될 텐데 기존 주주들, 특히 소액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무자본 M&A나 소위 기업사냥꾼들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도입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끝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투명화와 공정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주식 투자자가 1500만, 2025년 기준 1456만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00만 소액주주들의 권익에 우리 정부도 함께하고 있

다는 그런 마음으로 금융위에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금융위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말씀 주신 대로 의무공개매수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위원장 서영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지금 이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구조 개선에 큰 획을 하나 긋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향후에 시행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하여간에 말씀 주신 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레버리지 ETF 위원장님이 처음 제안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도입을 추진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 레버리지 ETF로 손실이 커서 과연 누가 추진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추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보면 거기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체 대표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제안을 안 했다 그리고 예탁결제원, 거래소 전부 다 제안을 안 했다. 도대체 누가 처음 제안을 한 것입니까? 추진 주체를 묻는 게 아니라 제안한 주체를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이미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하이닉스, 우리 한국의 기초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이미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 왜 우리 상품을 해외에서……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이게 또 말을 빙빙 돌리는 거거든요. 아니, 추진 주체를 묻는데 제가 추진했으면 제가 추진했다, 저는 추진 안 했으면 추진 안 했다, 누가 먼저 제안

을 했다……. 업계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홍콩 사례를 물어봤습니까?

지금 증권사 1곳만 조사가 됐는데 개미투자자가 4200억의 손실을 봤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금융위 자체적으로 그 손실 규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 부분은 증권사들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언제……

○주진우 위원 아니,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하셨으면 숫자를 딱 얘기를 하는 것이고 파악이 안 됐으면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손실이 수십조 원이고 실질적으로 증권사 한 곳에만 확인이 됐더니 4200억인데 금융위원회가 가장 먼저 챙겨서 국민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또 당시 그 상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제일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여기의 피해 상황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거는 가정이란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진우 위원 그래도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주도해서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추진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 앞에서 누가 제일 처음 제안을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 소관 사항입니다. 금융위가 당연히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고, 1월 28일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융위 정례 회의에 보고를 해서 ETF 비대칭 규제의 해소 방안을 저희들이 사전 보고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진우 위원 처음 제안자를 묻는 거잖아요, 첫 제안자를.

여러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무슨 업계에서 제안을 했으면 제안서가 있을 것이고, 업계에서 업체 대표가 제안을 하면 금융위원회에 말로 딱 제안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서류를 보내든지 뭔가 첫 제안자가 있을 거 아니예요. 첫 제안자를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주진우 위원 그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5년도에 여러 가지로 시장, 업계, 언론, 전문가들이 이 비대칭 규제, 국내외 규제차익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야 된다고 필요성 같은 것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갈 길이 멀어서 네 분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북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1월에 전북이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9월, 이제 10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성윤 위원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월 달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서를 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연구용역팀을 꾸려서 신청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이 수행 중입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아니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성윤 위원 그것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게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고요.

○이성윤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신청한 게 아니고요, 2017년에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세 번에 걸쳐서 대통령 공약이고 또 2019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해라, 그다음에 농생명·연기금 특화 모델을 개발해라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전북도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 국민연금 제2 사옥도 신축을 했고 금융 빅데이터 센터, 금융혁신 공유오피스를 조성했고 전북금융타운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모델도 자산운용·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를 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전북 지역에 가보면 금융중심지 지정이 빨리 되어야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공염불이 안 되고 또 전북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금융중심지 지정이 늦어지느냐, 부산이나 이런 데는 과거에 빨리 됐는데 전북에만 인프라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왜 안 됐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그 민원 들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성윤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이고 부산은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고 부산 문현지구 지정될 때 보니까 그때는 허허벌판이었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지정이 됐고 그 결과 문현지구가 이렇게 제2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내에 지정할 계획은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한 도시가,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전북만 지금 3개 정권에서 공약으로 들어와 있고 전북만 신청했으면, 1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빨리 결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과 관심이 많은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자치도도 그렇지만 도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올해 내에 지정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광규택 위원 금융위원장님 자제분 중에도 미래에셋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없습니다.

○광규택 위원 안 계세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광규택 위원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할 무렵에 네 차례 정도 금융위에서 비공개회의가 진행됐었다. 아마 이 종목 도입을 위한 회의였던 것 같은데 네 차례 정도 비공개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회의 때 어떤 내용의 회의가 진행됐는지를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 금융위는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금융감독원은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공개회의 네 차례 정도 진행한 것은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부분……

○광규택 위원 이 단일종목 ETF 도입 관련해 가지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뭐 다양하게 회의를 했기 때문에 도입 여부인지 아니면 도입 이후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점검인지……

○광규택 위원 금융위에서 만약에 다른 기관까지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면 비록 비공개회의라고 하더라도 회의록은 존재할 거 아닙니까? 누가 참석했고 어떤 발언을 했고 회의 주제는 뭐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것은 이제 보면 실무자들이 또 실무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회의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광규택 위원 지금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4000억을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 도입을 막았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도입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냥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보면 누가 이 도입을 최초에 주장했

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 됐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누가 처음에 도입 주장을 했고……

그것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외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ETF 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필요성들은 계속해서……

○**곽규택 위원** 누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업계, 시장,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곽규택 위원** 그게 미래에셋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같은 경우는……

○**곽규택 위원**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 요청에 다 응하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뜨겁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때도 책임 소재가 안 밝혀져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할 때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부분 같고요. 저희들은 뭐가 됐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더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닙니다. 지금 의결해 주신 자본시장법 저희들이 충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8)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74)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0)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5)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88)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02)

(14시34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통합제공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또는 제공하여야 하는 자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표현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 등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두 분만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부총리님, 빌게이츠가 말씀하신 AI 잘못 쓰면 10억 명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 우리가 악용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위원 우리나라는 10억 명이 안 되니까 전 지구가 해당되네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올바르게……

○박지원 위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안전과 신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AI 기본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잘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장관님, 인공지능 기본법 오늘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법안 추진하는 내용 보면 AI 학습용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으고 그것을 민간과 연결하게 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손술 위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이 법안이 지금?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정부의 사업 산출물들을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술 위원 AI 산업이 중요하다,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조급한 마음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부처별로 다르게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들이 법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최소 수집이어야 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통합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위협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작용,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연구했던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런데 이 AI 기본법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통합돼서 모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저작권 등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면서 이 통합데이터에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손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취지는 알겠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준비나 조사가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건데요. 이 통합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이라는 우려점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운영됐던 것에 되게 큰 예외가 지금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2021년에 법무부에서 인공지능 얼굴 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러면서 내 외국인 얼굴 정보가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던 적도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료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조사하고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우려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내부적인 논의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이런 어떤 권리침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거나 제외하는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슬 위원** 이후에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김민전 위원** 저도 손슬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금방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길 전문가들이 잘 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요즘은 제가 가진 저에 대한 데이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24만 해도 지난 5월에 과징금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그런데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었습니다.

정부24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곳인데 이곳조차도 이렇게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된다고 하면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민간하고 다 연결해서 원플랫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다 공공정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이 취지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각 부처의 어떤 연구, 산출물들, 사업화 산출물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저작권 이슈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통합 플랫폼에, AI 허브에 데이터가 모일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이 AI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에 활용을 할 텐데—정부가 무조건 퍼 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해서 인공지능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진흥시킨다는 측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후발이라고 얘기할 수…… 물론 우리보다 훨씬 늦은 곳들도 많습시다라는 일부 국가들보다 늦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국가가 너무 몰아가게 되면 정말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가 수립되어 있는 정부24 이거는 그냥 행안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부총리께서도 어떻게 해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부24조차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데이터 위원회 통해서 행안부 그리고 데이터처와 같이 데이터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데이터 관련해서 안전하게, 신뢰성 있게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영교 김한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정부가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의사일정 7항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회의자료에 수정안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내용을 보니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보완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보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예측가능성 측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는지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하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셨을 텐데, 다음부터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안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김종철 위원장님, 최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7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대리인의 의무 준수 및 지정 사업자의 관리 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신설할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된 게임배급업자가 플랫폼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동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되어 중복 규제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도록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체육단체의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한 징계요구·권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또는 그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치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제1항제1호는 체육단체가 제1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를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조치요구를 위반한 경우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의9제4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안 제55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시행일이 각각 공포한 날부터 6개월로 같은 동일제명의 두 안건은 본회의 처리 순서에 따라 개정문의 형태가 달라질 것인바 추후 각 안건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의 핵심 장면이나 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상영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상영시간을 제한받는 업종’을 ‘상영시간을 제한받는 대상’으로 법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 시행일 변경에 따라 해당 법률과 연계된 조문의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3조의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3제3항은 등급 미분류 영상물과 내용·등급을 임의 변경한 영상물 등 서로 다른 위반 대상과 행위를 하나의 호에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개 호로 분리하면서 관련 인용조문을 함께 정비하였고 안 제25조제2항은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등급을 표시하도록 본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관한 위탁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명시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두 분만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7월에 열렸지요, 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회가 크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고맙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정보격차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책이나 다른 어떤 출판물이 정보의 소재였지요. 그래서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다 취득을 했고 공공도서관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되었지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도서관이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을 지시하셨지요. 그래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인터넷 시대에 정보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은 그것이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인터넷

이나 컴퓨터로는 안 되고 AI 시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 시대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초에 25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이런 통계를 굳이 들이밀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 20대는 생성형 AI 경험률이 75.3%인데 60대로 가면 14.3%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있어서의 정보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는 역시 도서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더 커지는 데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AI에 더 쉽게 접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오히려 AI가 정보에서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의 도서관이 1300여 곳이고 거기 이용객이 한 해에 약 2억 3000만 명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부천에서도 지금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이제는 보편적 AI 활용의 장으로서 쓰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7년 정부예산안이 문체부에서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이게 AI 활용교육 이걸로 해서 10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예 전액 삭감이 됐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면 국회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빨리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국가가 안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향후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장관님께서 챙겨 보시고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들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계속 가고 있고 AI에 대한 리터러시도 되게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의 AI 같은 정책도 저희가 펼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그 구심점 역할을 공공도서관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연구해야 되고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런 예산들,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이거 하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카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용민 위원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측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렇게……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국내외 합쳐서 한 100만 명 이상, 외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아서 한 2주 정도 한국에서 머물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관련 법도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무래도 해외에서 5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오다 보니 교통 문제, 숙박 문제 그다음에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가 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준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 교황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역시 다르다. 또 최근에 K-컬처가 전 세계로 다 뻗어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행사도 확실히 다르게 한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정부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TF도 가동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이미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문체부가 주도를 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출입국 문제는 법무부에서도 같이 할 거라 저희 법사위가 계속 관심을 갖기는 하겠지만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관련해서 혹시 장관님 남양주에 있는 마재성지라는 곳 가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 가톨릭 행사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가톨릭과 달리 선교사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천주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김용민 위원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마재성지가 다산 정약용으로 알려진 그 집안의 19명이 순교를 한 곳이고,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가족 5명 전체가 다 순교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이 어디에 있냐면 두물머리에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곳에 내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천주교의 추기경님 등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하셔서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를 둘러보실 수 있게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저희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여러 의미 있는 곳에 많은 분들이 잘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멀어서요.

○김태규 위원 여당에서 두 분 하셨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2분 정도 하시면 되실까요?

○박지원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다음부터는 2분 정도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장관님, 내년도 예산 문체부는 확정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정부안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위원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청년패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넣을까도 있고 해서……

○박지원 위원 아니, 몇 %가 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정확한 퍼센티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1% 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전체 정부 재정에서요?

○박지원 위원 예,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금 정부 예산안으로는 1.18%입니다.

○박지원 위원 꼭 문화예술 예산이 증가될 수 있어야 K-컬처나 우리 문화가 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국악대회가 많아요, 특히 호남에. 그런데 제가 장관할 때는 굉장히, 대통령상 이런 것을 많이 격려를 했는데 전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전라남도 부분은 제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 차관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장관님, 5·18에 북한군이 개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5·18……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북한군이 개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

○김태규 위원 쉬운 답인데,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한테는 너무 비상식적 질문이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잠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개입 안 된 걸로 지금 공식화시키고 법까지 만들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아니다’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 될 어렵게 얘기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김태규 위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

○김태규 위원 쉬운 걸 자꾸 고민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김태규 위원 아니, 그냥 답을 해 보세요. 제 의도를 헤아리려 하지 말고 그냥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글썄요, 저는 맥락이……

○김태규 위원 그걸 ‘글썄요’라고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맥락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답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런데 장관한테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물어 보십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해 보세요, 쉬운 걸.

○김기표 위원 그런 것을 왜……

○박균택 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된 걸 물으셔야지……

○김태규 위원 좀 가만 있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 업무와 관련된 것을 물어 봐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은 문세광이 맞습니까?

○김기표 위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태규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답을 못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납득을 하지 못해서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이 쉬운 것 3개를 그렇게 답을 하나도 못 하세요, 장관은?

지금 시중에 ‘암살자’라는 영화가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시중에 ‘암살자’라는 영화가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가 왜 답을 안 드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몰라서……

○김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래서 저도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 질문하셨는지를 물어 봐 주시면……

○손솔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걸 모르세요, 지금?

아니, 암살자라는 영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분 정도 더 주시지요. 지금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제 갈 길이 많아서……

○김태규 위원 아니, 방해를 계속, 지금 발언을 안 하시고……

○곽규택 위원 첫 토론인데 3분은 주실 수도 있잖아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최종 질문을 할게요. 1분만 주세요. 1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런 질문 하실 것도 없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위원님 말씀 주세요.

○곽규택 위원 역사적인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왜 질문을……

○김태규 위원 아니, 그게 왜…… 암살자와 관련된 게 왜 장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 문체부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그러면 처음부터 암살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걸 확인하고 나서 그걸 물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정치적인 질문이지 않아요.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인 질문을 하지, 그러면 법적인 질문을 할까?

○주진우 위원 여기서 정치적인 질문 안 하면 뭘 질문해요?

○김태규 위원 아니, 장관은 5·18에 북한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가 답을 안 한 겁니다, 답을 못 한 게 아니고요.

○김태규 위원 그리고 문세광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답을 못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제가 답을 안 한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것도 답을 못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제 말의 뜻을 이해 못 하세요? 그 맥락을 이해 못 하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박형수 위원 누가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똑바로 하세요!

○김태규 위원 그 쉬운 걸 답을 못 해. 그러면서 대한민국 장관이세요.

○위원장 서영교 문체부장관님 답변 잘하셨고요.

됐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법안 관련해서 제안하실 게 있으셔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의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오늘 안건 14번의 음악산업법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사업자등록하고 사후 관리를 영등위하고 문체부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법체계상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그리고 사후 관리 권한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안은 영등위 쪽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맞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의견을 내시는 데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등의 사유를 고려해서 해당 조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하신 대로 의결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1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휘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지원 위원 답변 잘 했어요.

○김태규 위원 뭘 잘해요, 뭘 잘해? 대한민국 장관 할 자격 있어요? 대한민국 장관 할 자격이 있냐고!

○박지원 위원 영화는 영화로 보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영화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다양한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무현·문재인 가지고?

○위원장 서영교 적당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적당히 해, 적당히.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은 토론의 기회를 좀 보장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먼저 손 들었으면 3분 했지, 그런데 안 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갈 길이 멀어서 2분으로 한 거니까요.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8)

1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6)

1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1)

1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78)

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입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35항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1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1호 및 제3호의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각 협의체가 별도로 추천한다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농어촌 빈집을 이용한 민박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안 11조의2제4항은 등록을 직권말소하도록 하고 있고 안 11조의14제1항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 간의 충돌이 있으므로 직권말소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집행·보호 관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죄 사건 및 동물보호 사무에 전문성이 있는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경찰관이 아닌 동물보호관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경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 등을 격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 동행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어선원 직접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에서 '1년 중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일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법 규정과 개정안은 어선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의 근로관계가 조문 표현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관계가 명확해지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대한 신체검사 및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성폭력범죄 경력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면허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에서도 해당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위임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당 교육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제26항, 제27항, 제29항,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는 경

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2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어서오십시오.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서오십시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님 어서오십시오.

출석하셨습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님께서는 최근에 취임하시고 처음 법사위에 출석하셨네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양경찰청장 하만식입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곱 분이나 되셔서 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오겠습니다.

박지원·박은정·박균택·주진우·김동아·김민전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광규택 위원님까지 그렇게 토론하겠습니다.

2분씩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제 파워 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웃음소리)

○박지원 위원 금년에 제가 볼 때는 엇그제 착한 비까지 내려 가지고 벼농사가 대풍작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멸구 피해도 없고, 물론 조금 있어요. 참 잘됐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배추가 중요하잖아요. 해남 배추가 하루에 2cm, 3cm씩 자라고 있어요. 수입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이제 공모 받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17개 지역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를 위해서 공모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박지원 위원 2028년부터 전국, 전 농어촌에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는 69개 인구감소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그 성과를 본 다음에 본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 3.0, 그것 왜 그렇게 선정 안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해양수산비서관한테까지 전화했는데 지금 이미 선정해 놓고 어촌에서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정리해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 발표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마 마지막 정리하고 조금……

○박지원 위원 뭘 정리해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제도개선 부분을 좀 같이 논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마 약간 연기가 됐던 부분이……

○박지원 위원 그러면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해야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빨리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박지원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예, 위원님.

○박지원 위원 축하합니다.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저희 진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려고……

1분만 더 주세요. 안 돼요?

○위원장 서영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원 위원 신설하려고 하니까 잘 좀 도와주세요.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예, 적극……

○박지원 위원 그리고 완도 해경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수부장관 해당되는데 김 양식장 그런 불법이 많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 보고 안 받아 봤지요? 보고 받아 보고 철저히 하세요.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시간 1분 못 드려서……

의원실에 가서 잘 설명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 하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은정 위원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정된 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벌금으로 쏟아지고 4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 전체를 몰수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싹 끊겼습니다.

대부분 고령농이고요. 농사도 힘든데 땅도 안 팔린다며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외한 지역 중에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강원은 38.8%이고 지금 농지가격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거든요. 경사지·오지에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려 해도 받아 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농가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에요. 그런 부분을, 투기와 무관한 이런 선의의 고령농가들의 시름이 높아 가고 있고 지금 호남의 농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협의회에서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안에 중대한 불법 전용만 농지법대로 처분하고 상속·고령·이농으로 농사를 못 짓는 농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휴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진 정비 기회를 준 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유예한다,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농지조사 시작할 때부터 투기와 관행적·일반화된 농촌의 이런 위법사항은 구분하여 처리한다라고 누누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들이 이상하게 증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조기에 잠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당정협의 형태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 주신 대로 고령이나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휴경 그리고 지금 우리 농지법상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임대차 이런 것들은 현장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처벌이나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투기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딱 세 가지 유형이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 말하자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산 다음에 그것을 임대차, 불법입니다, 임대차를 하거나 휴경을 하거나 하는 것, 그런데 이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경우만으로 제한을 하여 이것을 투기라고 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영농법인, 영농법인은 농사해야 됩니다.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농사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거나 혹은 그냥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지분 취득만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역시 방치하거나 임대차한 경우, 딱 이 세 가지만을 투기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법 개정예 동의해 주셔서, 25% 이행강제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있었던 규정이고요. 이번 농지법 개정예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건 뭐냐 하면 이게 재량사항으로 돼 있었던 것을 의무로 바꾼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처분해야 되는 토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자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1년의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부과되는 것이고 처분명령이 부과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처분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투기의 경우가 아닌 농촌에서의 이런 일반적·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 부분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투기로 인한 농지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행정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리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전수조사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지 전수조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수조사라는 말을 빼셔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지 조사로 할까요?

○위원장 서영교 농지투기 조사 이렇게 하시면, 농촌의 농지투기 조사,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괄호 열고라도 그렇게 표현을 할 듯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농지투기 조사, 농촌에까지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시는 것과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걱정들이 오고 있고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투기 조사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균택 위원 산림에 관한 질문 하려고 정식 명칭으로 길게 불렀습니다.

요새 소나무재선충병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색, 초록색이어야 할 산이 거의 갈색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그것 하나가 궁금하고.

또 하나 질문은 실질이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 지역, 읍면 농촌에 비해서 정부 지원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열세 가지 정도 차별이 드러나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 농촌이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구 명칭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이 현상, 저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농식품 기본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마는 또 입법과 상관없이 농림부 차원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가 많이 되었어서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은 이것은 지방정부 몫이라 지방정부에 맡겨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산림청이, 말하자면 주도권을 가지고 방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방제 라인을 치고 그 방제 라인 안에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법률상 농촌의 범위라는 게 읍면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광역시나 대도시의 동 지역에 속해 있는 엄연히 농촌 지역인데 사실 이런 혜택에 있어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법률안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농촌이라면 농촌에 준하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보면 되게 이 정권의 오만함이 딱 묻어납니다. 보면 전체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질러 놓고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일정 부분 조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 규모가 조사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차피 또 전수조사를 해야 이게 상속에 의한 농지인지 또 다른 이유에 있어서의 농지인지를 그때 가서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해외에 가서까지 실질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제대로 농지투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정정옥 성평등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이천·시흥의 GTX 노선 있는 데 기획부동산 통

해 가지고 쪼개기로 딸과 농지를 매입했어요. 명백한 투기입니다. 그리고 한성숙 국무총리, 알다시피 여기 양평 쪽에 지금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농지 보유하다가 인사청문회 때 걸려서 지금은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토지를 정자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무슨 개인 정원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남편은 인천에 있는 의사인데 저 평창에까지 가서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의사가 주말에 그 넓은 땅에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이런 고위직들의 농지투기가 드러났을 때 농림부에서 딱딱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농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조사 규모를 줄이지 않습니다. 조사 규모는 줄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주진우 위원** 아니, 고위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투기로 규정한, 제가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정정옥 비서관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보도 다 나와 가지고 본인이 기획부동산 통해서 샀다고 지금 자백까지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면 처분을 해야지요, 위원님.

○**주진우 위원** 그것 왜 즉시 처분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농민들한테만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니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들은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고위직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고위직 눈치 안 보고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거기는 경매 통해서 벌써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사에 나와서 다 봤지요.

○**주진우 위원** 아니, 처벌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팔았다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즉시 처분을 해야지요. 본인이 팔았다는 것은 투기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걱정거리 없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대상이 되나 이런 걱정은 나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자꾸 그렇게 흥흥하게 만들어지는, 매도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장관님, 마사회가 농림부 소속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과천경마공원 이전하고 주택 건설 발표했는데 경마공원 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사회에는 마사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마사회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사회가……

○**김동아 위원**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마사회라는 공기업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농림부 산하기관으로서 제대로 이전될 수 있게 내부 구성원들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국토부가 주관하고는 있지만 국토부가 그 마사회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농림부만큼은 모를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것을 단순히 마사회에 던져 놓고 알아서 당신들 결정해서 이전하자라고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고요.

○**김동아 위원** 내부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동의는 한대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많은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사회랑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영천에 새로운 경마공원 짓는 데 17년 걸렸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려면 5년 만에 새로운 경마공원을 짓고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주택을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마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국토부 입장에서 전반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세세하게 챙길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지금 마사회가 토지 조성비나 새로운 경마공원 조성비도 부족하다고 하고 내부 구성원들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주권정부가 잘 이어 가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아 위원** 적극적인 역할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마사회에게 지금 정보를 다 제공을 했고요. 마사회의 의견을 계속 듣고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장관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참 오만하고 그리고 무능하다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전국의 농지 가운데에서 투기 대상이 되는 게 몇 %나 될까요? 사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 혹은 수도권 주위 혹은 관광지 주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투기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고 하니 이게 자기 돈으로 행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답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민전 위원** 답을 얘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전국에 농지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수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시골의 촌부들을 패닉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그 심리적인 보상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투기 유형이라고 하는 게 일반 농촌에서 그게 해당합니까? 안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농부들한테는 투기의 대상만 우리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요.

특히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농지를, 땅을 사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보겠다. 아니, 정부가 제대로 이용하는지 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 아닌가요?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땅을 사서 파를 심든 벼를 심든 이것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1년 쉬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쉬어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만을 넘어서 이것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데 대답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농지법은 다른 토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지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게 농지법입니다. 이번에 농지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했으나 정보가 분산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지를 한번 다 맞춰 보자 해서 분산된 정보를 DB화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강제매각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분노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김민전 위원** 아니, 강제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처분을 받은 농지, 아까 투기에 대해서, 그래서 투기는 잡되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고요. 대통령 말씀 중에도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고령으로 인한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가 이렇게 작는데 여기서 식량안보 이루려면 농지 이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농지제도, 농지법을 개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과 농지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통해서 이 잘못된 법률을 개정을 합시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곽 위원님.

○곽규택 위원 부산 동구가 뭐로 유명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여러 가지 많이 유명한데 부강이 또 있습니다. 요즘 부강이가 되게 유명합니다.

○곽규택 위원 해수부 본청사가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위치하기로 결정된 직후에 북항 친수공원을 찾아온 상어 부강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봐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고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면 상어 부강이를 내보내겠다, 이게 아마 지금 어떻게 강제적인 조치를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던데 그 책임을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고요. 그 지역은 부산항만공사가 아마 담당을 하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산에 많아서 하시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생물은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자연친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혹시라도 강제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누구 책임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지금 부산항만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상어 부강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특수 그물을 제작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게 누구 책임인지 몰라 가지고 서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벌써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해수부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상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서영교 기차 떠났습니다.

○곽규택 위원 나갔어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윤상현 위원이 손 들어서 기차 떠났다고요.

1분만 하실래요?

○윤상현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1분만 하세요.

○윤상현 위원 아니, 송 장관님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행정 그리고 탁상행정이 결합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답도 하셔서, 그래 가지고 농지 전수조사를 해, 그렇지요? 탁상행정식으로 막 방침을 내놔. 그런데 정말로 농지를 경작하고 관행적인 임대차를 하고 상속하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막 아우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림축산 청와대 비서관, 이영수 비서관이 또 사죄를 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8·3 세제개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한번 반성, 성찰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대통령이 오만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셔서, 그러면 행정부 무조건 따라가,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나,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문제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농촌을 더 살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농촌에 있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래서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처럼 지역에 사는 게, 지방에 있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까 농촌기본소득처럼 해 주시고 농촌에 투기꾼이 오는 것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9항까지, 제21항부터 제3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황종우 장관님, 하만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자중기위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소상공인정책 수립·시행 시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출석하셨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식 등으로 차관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이병권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통과됐네요.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의결해 주신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요즘 저희 지역은 각 시장마다 상점과 상인회, 시장 등이 축제를 합니다. 들어온 돈의 일부를 바로 돌려주는 그런 식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국민이 주신 세금을 그런 곳으로 많이 투입해서 국민도 돈 내고 사서 드시고 물건 사면서 또 일부를 반환받으니까 아주 좋고 상인회도 살아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좀 더 살려 내시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소상공인들과 국민이 행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급여의 범위에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외에도 관리비를 추가하고 수급권자의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의 미혼 자녀인 청년가구원이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주거급여의 내용으로 추가된 관리비를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으로 정의하였고 국가 등이 임대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임차료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법정 의무지출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주거형태별·수급자별 관리비의 지급기준을 위한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은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홍지선 장관님, 임명을 축하드리고 처음 법사위 출석하셨는데 인사말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입니다.

국민들께서 주택 문제로 걱정이 큰 시기에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2차관 경험을 살려서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역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안이 하나라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균택 위원 짧게, 1분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1분만……

○위원장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두 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감사합니다.

○박균택 위원 작년에 서해선 철도 연장 문제하고 광주 신산업선 신설 연결 문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남, 전북, 광주 전 국회의원들이 신설 및 연

장 건의서를 전체 다 서명해서 제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철도계획은 언제쯤 확정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5차 철도망계획의 B/C 분석은 끝났고요. 지금 재정당국과 총사업비에 대한 실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링을 저희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5차 망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업 노선을 담으려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동해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는 서해선 철도 그리고 대구에도 있는 산업선 문제가 광주 산업단지에도 연결되는 문제 특별히 장관님께서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감사합니다.

○김동아 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예.

○김동아 위원 지금 여러 발표가 나고 많은 지방 의원님들께서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게 단순히 발표만 나고 내부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화로 해서 오늘 공공노련의 위원장께서는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 단식 농성장에 한번 방문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기회가 되면 협의체 구성원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협의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해수부 사례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 구성원들이 만족스럽게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다 동의하고 정착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지만이 갈등 없이, 분쟁 없이 그러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힘든 거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도 그 내부 구성원들하고도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

출한 2027년 예산안에는 범정의무지출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주거형태별·수급자별 관리비의 지급기준을 위한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안 시행일을 28년 1월로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던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국토위원장님 또 여야 간사님께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세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3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4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5시44분)

○위원장 서영고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6항까지 1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56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안 11조는 좀 전에 심의하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는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를 규정한 안 27조의4에 대하여 민법상의 권리능력 기본 원칙 및 후견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수급권자의 권한이 중대하게 제한됨에도 급여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동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과 금융정보 제공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 4항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간주 규정은 신청 간주 여부의 판단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 규정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제도를 이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예방접종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애 진단에 따른 일시 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진료비 및 간병비를 공제하는 경우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제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지급 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추가적인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지역이송체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인 제48조의2제1항의 삭제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용기관 지정 주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로 이원화한 안 제48조의2제6항은 책임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8조의2제6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응급의료체계 혼란 및 파장을 고려해 수용기관 지정 주체 중 119구급상황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39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38항 등 그 밖의 14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들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심의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것하고 관련해서 제4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안 27조의4에 의사무능력자 등 스스로 급여관리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민법상 후견인 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해당 사항은 삭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액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국토부 안건의 주거급여법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의결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해당 조항인 제11조도 주거급여법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의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27조의4 관련해서는 법무부, 법원 등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보기에 어떻게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급여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견인이나 이런 쪽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요 보완한 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보완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2분씩, 이번엔 거꾸로 하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손솔 위원, 김민전 위원, 박은정 위원 그리고 주진우 위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광규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안전 52항이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지요,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으로?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흔히 말하는 응급실 뽕뽕이를 어쨌든지 좀 줄여 봐야겠다 해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좀 바꿔 봐야겠다 해 가지고 이 법이 그냥 통과돼서 왔는데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 왔는데 이거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받았습니다.

○광규택 위원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법률 시행에 앞서서 하위법령과 세부기준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법이 지금 개정되면 시행을 언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법의 시행일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행일은 6개월……

○광규택 위원 6개월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광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고 저는 이런 법을 바꿀 때, 물론 응급실 뽕뽕이를 줄인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위의 부대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대한응급의학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보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법을 가다듬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회에서는 법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법은 시행하고 나서 하위법령이나 시행지침과 같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좀 더 촘촘하게 반영해 달라라는 걸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협에서 우려하셨던, 그러니까 사전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라라는 것이 삭제됐다고 이해를 하셨는데 그거는 삭제된 것은 아니고 지역별 이송 지침에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일부 조문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하면서 하위법령과 시행 준비

하면서 잘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법 개정안을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검증이 진행이 되면서 법률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하위 법령 만들고 시행 준비할 때 잘 반영해서 현장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응급학회에서 낸 의견을 보면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게 아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거나 2소위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의견으로 제안하신 걸로 하고요.

손술 위원님이시지요.

○**손술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에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라고 전제를 하였고 다만 법률 시행 준비할 때 하위법령, 세부 운영기준 만들 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셔서 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라는 의견서를 최종 보내 주셨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학회랑 마저 조율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응급 환자 수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역별 이송지침에 그 내용을 담도록 조문이 변경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알겠습니다.

손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장관님,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어제부터 소방공무원 분들께서 문자를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부디 잘 통과되길 바란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좀 보내 주고 계세요.

이 법안이 지금 한 10개 정도가 발의돼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서 왔고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분들이 정말 얹혀 있고 지역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간담회도 수차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시범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맞춤형 이송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법 만든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로는 43항, 47항에 있는 이게 신청주의를 극복하려고 법안 발의해서 논의

된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6건이 같이 발의됐습니다.

○**손솔 위원** 이 논의가 된 과정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나 보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저희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지역에서 시행을 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응급의료 자원과 응급의료 수요를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이송지침을 만들고 그 이송지침을 119 구급대, 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실행 가능한 이송지침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이송 병원을 선정하더라도 병원들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광역응급의료실에서 이런 이송이나 전원을 조정해서 우선 수용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종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까지를 연계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걸 근거로 9월 말까지 16개 시도에 다 지역별 이송지침을 이미 만들어서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만들고 그 안에 우선수용병원이거나 아니면 이송에 대한 수용 가능에 대한 판단이라거나 하는 내용들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주의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사용 범위를 굉장히 최소화해서 본인에 해당하는 것만 금융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금융정보도 지자체까지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결과물만 지자체하고 공유하는 등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금융위와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지난번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 김승원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식약처의 부당한 절차적 지연에 대해서 민원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부당한 절차적 지연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허위 조작된 정보를 강 모 교수가 제출했는데 그 민원 전달이 있고 난 이후에 임상 2상과 3상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민원 전달이 성공한 것인데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하면 이렇게 부족한 서류여도 그냥 임상이 허용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손솔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아무리 직권신청,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도 없는데 직권신청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본인이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해 준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동의를 사전 내지 사후에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제가……

○**위원장 서영교** 오유경 처장님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문제에는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고(GO)·신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15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던 시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식약처에서 45개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을 처리했는데 평균 처리 기간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넨셀 건은 10일에서 하루 늦은 11일이어서 그렇게 빠르지도 그렇게 늦지도, 거의 평균 수준이어서 절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민전 위원** 그러면 부당한 절차적 지연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특별한, 절차적으로 지연을 고의로 했다가 또는 고의로 빠르게 했다가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임상 관련해서 식약처 직원들이, 여섯 번 정도 압수수색이 식약처에 들어왔었고 식약처 직원들이 여러 번 관련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직권신청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울주군에서 아버님이 세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긴급복지지원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 해서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을 했었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아버님은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신청을 기피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 특히 발달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신청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거나 남용되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수급자격 조사를 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정은경 장관님, 응급의료법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도 기사가 ‘심정지 환자 10명 중 9명이 병원 도착 전에 심장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

든요.

이번에 응급의료법 잘 개정해 주셨고 그래서 병원에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이 아니고 이 법은 핵심은 수용의무와 국가의 조정책임을 함께 법제화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 고통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벌 처벌 감면규정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는 안정장치를 만드시기에 했는데 이게 약간 불명확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 의료분쟁조정법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피해에 대해서 병원과 의사와 나중에 합의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받지 않는, 또 약간의 중과실이 돼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더 실효성을 마련할 수 있는 중과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돼서 거기서도 응급질환이 포함된 형사특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적인 적용은 받게 되고요. 응급의료법은 약간 특별법적인 성격이고 이미 임의적인 감면조항이 있는데 그걸 필요적 감면으로 바꾼 정도의 변화여서 두 가지 법이 다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어서 거기서 말씀하신 중과실이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될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에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박은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오 처장님, 아까 10일, 11일 말씀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거 보면 ‘평균 71일이다. 그런데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는 33일이다’, 이걸 또 무슨 셈법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것은요 업체가 보완하는 기간은 그 업체가 보완할 게 많으면 길어지고 보완할 게 적으면 짧아집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고(GO)·신속 프로그램에서 15일을 한 것은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심사기간은 식약처에서 노력하면 빨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심사기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업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보면 강세찬 대표가 햄스터 동물실험 한 것에 대해서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3개 의료기관, 제가 알기로 부천성모병원, 그렇지요? 또 은평구…… 아, 순천향 부천병원, 은평구 성모의원 또 경희대병원, 9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그에 대해서 안전성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 또 무슨 증상이라도 있었는지 이것

을 식약처에서는 실시기관한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저희 사무실에 답변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직접 그 상황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차후라도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일단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심사위원회를 해서 안전성 같은 것들을 고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과한 것이고 그리고 임상시험 동안에 그 SUSAR라고 해서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중대한 부작용 의심사례가 생기면 실시기관에서 그것을 바로 식약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지금 보고가 있었던 SUSAR라는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의심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서 현재 지금 그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정은경 장관님, 장관님이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있었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사실상 강제성을 저는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당시 코로나 백신을 맞고 20대 교대생이 폐색전증과 뇌경색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보상을 안 하니까 6년간의 진짜 외롭고 힘든 싸움을 거쳐 가지고 최근 들어서 1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고요.

2021년 12월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2시간 뒤에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겼는데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2심을 걸어 가지고, 항소를 제기해서 또 했는데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백신 피해자들의 소송 현황에서 1심이든 2심이든 승소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건 제가 최근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주진우 위원** 좋아요. 그 통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대장동 일당들은 실컷 7000억, 8000억 해 먹었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항소 포기하느냐 하는데 국가의 항소권 제기가 이렇게 불균형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6년 만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백신접종이 계속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도 재정비해야지.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곱팡이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무슨 자체조사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저희 질병관리청 소관……

○주진우 위원 일단 장관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코로나 백신 관련한 배상이나 보상에 관련해서는 이게 신규 백신이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셔서……

○주진우 위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좀 더 폭넓게 보상이나 배상을 인정하는 법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재심이나 이런 과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잘 이행되도록 질병관리청과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6년을 기다렸는데 대처가 늦다는 얘기고요.

관리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저희가 1심 행정소송이 있었던 경우 선고가 나온 게 54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청이 41건을 승소했었고 13건을 패소했습니다. 13건 중에서 제한적으로 4건의 항소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이 4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학 감정의 결과와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거나 아주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명백히 제시됐지만 판결이 예상과 달랐던 경우에 제한적으로……

○주진우 위원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하지,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 하면 지금 누가, 어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필수예방접종만 한 말씀해 주세요. 필수예방접종 어떻게 할 겁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코로나19라는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에게 매우 위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고 그런……

○주진우 위원 부작용부터 정확히 규명을 해야지 안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속도를 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그런 이상반응과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관리청장님,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청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게 아까 몇 건이라고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1심에서 현재 선고가 나온 결과 중 41건이 승소, 13건이 패소……

○**김기표 위원** 13건 패소했는데 그걸 다 항소한 게 아니고 4건만 제한적으로 한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중에 제한적으로 4건을……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마치 패소한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항소했다든지 이런 건 지금 아닌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 모든 과정도 소송행위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13건 중에 4건만 한 거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야 정쟁도 아니고 말씀처럼 그 당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백신 맞고 떠나는 분 저도 가까이서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국가는 아프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패소했다고 다 항소하지는 않고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경우에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예, 매우 제한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한적으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및 제44항부터 제56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임승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5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6시15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안건이 제58항인데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해결한 후 잠시 여야 간사님이 증인·참고인 관련해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서 10분 정도만 정회할 예정인데 그렇게 시간을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쉽 없이 달리셨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인이 기다리고 계시는 증인·참고인 의결, 조희대 일반증인 의결 그리고 또 대법관 제청, 재제청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이고요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8.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숫자를 좀 제한하지요, 그다음 일정도 가셔야 되니까. 두 분 정도로

제한하실까요?

○박형수 위원 아니, 다 손들었는데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그다음 일정도 있는데……

○김태규 위원 2분밖에 안 되는데, 다 해 봐야 12분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3분이지 왜 2분이에요?

○박균택 위원 헛갈리면 간사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아까 3분…… 3분 해도 6명, 18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 두 분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3분 하고 한 세 사람 해요, 세 사람.

이 중대한 일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서 하고 끝내 버린다고요? 지금 국정감사 명단에 보니까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겠다면서요? 이 중요한 의사일정을 2명 의사진행발언하고 끝내자고요?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는 건 벌써 그전부터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누가요?

○박형수 위원 누가 동의를 해 줬어요?

○위원장 서영교 얘기가 오래전부터 됐던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무슨 얘기가 오래전부터 돼요, 동의도 안 된 것을?

○김태규 위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3명?

○김태규 위원 다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의사진행발언하는데 그러면 이쪽 세 분, 이쪽 세 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누구누구 하시겠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김태규 위원 저쪽은 손 들지도 않았는데 뭘……

○박형수 위원 이쪽은 들지도 않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왜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할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토론으로 가면 되는데 토론을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거야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세 분 정하세요.

○박형수 위원 누구누구……

윤상현 위원 한번 하시고 곽규택·김태규 위원 둘 중에 하나……

○곽규택 위원 김태규 위원님 하세요.

○김태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윤상현 위원,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또 이쪽은요?

○박형수 위원 그쪽은 의사진행발언이 없는데 왜 억지로 시키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

게 의사진행하시네.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뭐라고 하는지 들어 보고.

○**김민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어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으면서 들어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박형수 위원** 들어 보고 해요, 그러면.

○**김기표 위원** 들어 보고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자, 의사진행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저희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받아 보았습시다마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명단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세요?

○**윤상현 위원** 간사 간 협의가 안 됐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 이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사실 누구도 국회 검증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 수장은 일개 행정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헌법 104조 2항에 한해 대법관 임명 제청한 것에 관해 국정감사의 증인석에 세워서 이것을 신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반대합니다.

특히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임명동의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추궁하고 사후 신문할 권한이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물겠다 하는 것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 법에도 위반입니다. 또 법원조직법 65조에 나와 있는 ‘법원의 심판의 합의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그 규정 위반입니다. 또 국회법 37조에 나와 있는 우리 법사위가 담당하는 사법, 법원에 대한 권한은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의 사항입니다. 재판이라든지 대법원장 제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검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에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증인을 채택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장에게 하세요.

○**김태규 위원** 증인명단 방금 받았는데 요지 자체가 위헌 상태 초래 관련입니다. 장기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인데 위헌 상태를 초래하는 건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입니다. 대법원장은 자기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했고요. 제청권 행사함으로써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리 다 행사한 겁니다. 더 이상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동의 기관인 국회와 그리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법에도 근거도 없이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을 이유로 해서 사람을 불러낼 요량이면 방금 윤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고사하고 김현지 실장 한 명 안 불러내는 이 법사위에서, 이 국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의도가 됩니까? 다른 건 아니지요. 다른 건 아니지요. 결국에는 대법원장 모욕 주고 창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얼마나 몰아세웠습니까? 현수막 붙이고…… 현수막 붙이는 것 자체도 그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결국에는 이 회의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유 하나도 결국에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법원장 창피 주고 압박 줘서 결국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 외에는 아무런 분명한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명분 없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제안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부요인입니다. 삼부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기관을 방문하면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는 정도의 관례는 있었을지 몰라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입니다.

앞서도 보면 문체부장관 나왔는데 남침이나 북침이나, 5·18에 북한 군대가 개입됐냐 그다음에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것이 문세광이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깐 그것가지고도 정치적이라고 하셨던 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정치적입니다. 오로지 사법부의 독립은 관심도 없고 정치적으로만 끌고 가서 제청권을 침해하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더 확정시켜서 앞으로 사법부 자체를 자기들 의도한 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했어요. 사태를 종용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게요, 제청하기 전에. 이게 재판의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곽규택 위원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지난번에도 허위사실 유포해 놓고……

○김태규 위원 그것도 확인 안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했던 것 다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누가 이야기했어요?

○김태규 위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함부로 확정 짓고 서영교 위원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하면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 수 있는데 동의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시인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재판의 독립입니까?

○곽규택 위원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김태규 위원** 사실관계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여야는 다투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왜 국민이 하는 판단을 서영교 위원장이 나와서 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박규택 위원** 김민기 후보하고 내통하고 있어요? 김민기 판사하고 내통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이?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그날 나와서 다 답변할 때 출석 안 했었어요?

○**김민전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박규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위원장 서영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전화한 것 맞다, 4명 다에게 전화했다……

○**김남희 위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김태규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 혼자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권한을 위원장 스스로 판단해서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동의해 주신다면 대법관추천위원회 새로 꾸릴 수 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박형수 위원** 아니,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된 상관이에요, 그게? 본인이 했다 그랬는데. 똑바로 듣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재판입니까, 여러분?

○**박규택 위원** 사태 중용하는 전화 한 적이…… 그게 무슨 증언이에요? 그런말 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서영교** 그게 재판입니까? 제청을 하기 전에……

○**김태규 위원**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이재명 재판 안 한 것 그것 하나 말고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재명 재판 하는 게 그게 정의고 그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위원장 서영교**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것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박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 나오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나오라고 해.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해야 돼요! 이재명 재판 속개!

○**위원장 서영교**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해야 돼요, 이재명 재판!

○**박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 불러내세요.

○위원장 서영교 이것은 확실하게 법 위반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이재명 재판!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업무추진비를……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다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 불러내세요, 그러면. 같이 증인으로 불러내시라고. 우리 쪽에서 신청한 증인 하나도 안 넣고 말이야.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

○김남희 위원 시끄러워요.

○김동아 위원 계속해. 계속해.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안 그래요?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 속개하세요, 이재명 재판!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국정감사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자, 다음은……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 속개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나 주세요, 자꾸 위원장이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태규 위원 위원장이 왜 함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서영교 좀 조용히 해 봐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답변을 허위로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해 보고, 위원장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김태규 위원 없어요! 그런 것 없어요!

○김민전 위원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사 정리를 하는 거지?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답변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곽규택 위원 답변을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 서영교 내가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그러면?

○김태규 위원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만 있지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 함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을……

○곽규택 위원 아니, 이런 일방적인 증인명단 던져 놓고 우리보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이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해야 돼요.

○**곽규택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내려면 대통령도 불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대통령을 같이 부르자고.

○**김태규 위원** 자, 그러면 대통령 불러냅시다. 대통령 불러내서 위헌 여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불러내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곽규택 위원** 대통령 같이 불러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곽규택 위원** 이렇게 일방적인 것 명단 만들어 가지고 던져 놓고.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

○**주진우 위원** 본인은 선관위원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중요한 건……

○**주진우 위원** 선관위원장한테 왜 전화했습니까?

○**김태규 위원** 그러네. 그거나 밝히세요. 선관위원장한테 왜 하셨어요?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재판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어요. 이것 다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민전 위원** 넘기려고 한 게 아니지요! 무슨 소리예요.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회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관할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돼서 이 재판관할을 넘기려고 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김태규 위원** 이재명 재판하고 이재명 대통령 여기 증인으로 불러내고 그렇게 하면 사법 정의가 서고 사법부 독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결국에는 국정감사 증인을 그런 이유로 불러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와서 답하겠다는데……

○**김태규 위원** 대법원장 불러내서 결국에는 면박 주고 창피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대통령 나오라고 하라고!

○**곽규택 위원** 재제청 관련된 거면 대통령도 같이 나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다음, 박형수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것 발언에 항의하다가 목 다 쉬어 가지고 발언을 못 하겠어요, 진짜.

○**위원장 서영교** 잘 조정을 하세요.

○**박형수 위원** 저는 오늘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법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법에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이것은 뭐 하려고 합니까? 요식행위입니까?

김의겸 간사님, 오늘 아침까지 저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 왜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서 다 결정할 것 같으면 혼자서…… 김의겸 간사님 혼자서 못 하

시지요? 아마 위원장님이 거의 혼자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간사한테 왜 협의를 하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세 관련, 국민 건강과 관련된 증인 하나도 채택 안 했어요. 편파 수사로 유명한 특검들 우리 신청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증인을 하면 안 되는지는 이제는 전 국민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게 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동안 수많은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례를 깨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서 지금 이걸 방어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것 모르십니까? 저는 다 알면서도……

정말로 누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 누구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재판 안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생깁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남희 위원** 협의 안 하고 제청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피고인 이재명 불러내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게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께 정말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현안질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현안질의도, 위원장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국회법 맨날 들고 얘기를 하시더니 그 국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간사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저는 긴급현안질의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합니다.

이것 역시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사법부를 불러내고 하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구하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이 법치주의, 법치국가, 문명국가 이것 좀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는 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 증인 관련 발언인데요.

○**곽규택 위원** 아니, 재판을 할 거면 이재명 피고인을 불러서 국회에서 재판을 합시다, 그냥.

○**김민전 위원** 다 불러요.

○**곽규택 위원** 왜 조희대 대법원장만 불러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김민전 위원 조용히 하다니요.

○위원장 서영교 세 분 하셨으니까 또 의사진행발언하셔야지요.

○김기표 위원 국정감사를 하면 관행적으로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2·3……

○김민전 위원 사안이 다르니까 다 불러요, 다 불러.

○박형수 위원 뭐가 달라요, 뭐가?

○김기표 위원 보십시오.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얘기할 테니까 들어 보세요.

재제청 관련해서 처음에 대법원장이 국무위원들 부서가 없었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다가 다음 날 청와대에서 반박을 하니 국무총리 부서가 있었고 형식적인 면은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사법부의 일인자,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재제청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재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 극대노를 하면서 이것을 자기 뜻대로 그냥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심지어 ‘재제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안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아니, 행정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당신은 재제청을 거부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 왜 재제청 요구를 했는지 대통령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그렇지, 피고인 불러서 물어봐야지.

○김기표 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나와야지.

○김민전 위원 다 나오세요.

○김기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따 현안질의에서 물어보겠지만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인원수를 부풀려 가지고, 사실 10만 원 15만 원 먹은 그런 것을 열몇 명씩 더 부풀려 가지고 한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회에서 물어야 되고 그것의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은 고유한 권한인데 어떻게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처장이 저렇게 부인하고 있으면, 본인이 청렴하고 솔직하다고 하는 대법원장이 나오면 솔직하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과는 달리 지금의 사안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각 사안, 사안별로……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회의를 한 것은 왜 한 것인지 이런 것, 물어봐야 될 게 지금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리고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번에 재제청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박형수 위원 아니, 누가 언제 증인 나가겠다 그랬어?

○김기표 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밝히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 주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세요.

(장내 소란)

○김태규 위원 대통령 나오면 돼요. 피고인 나오면 됩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부르고 왜 재제청 요구했는지 대통령도 불러 보자고, 다 불러 보자고!

○곽규택 위원 간사 간에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한 명단이에요. 대법원장 부르려면 대통령도 불러요, 같이.

○박형수 위원 대통령 부르자고, 대법원장도 부르고.

○김태규 위원 피고인이 나오면 돼.

○김민전 위원 다 같이 불러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 혼자 정한 명단 가지고 우리 보고 이것 통과시키자고 해요?

○위원장 서영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박형수 위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 왜 못 나와?

○곽규택 위원 왜 말도 안 돼요, 그게?

○김태규 위원 왜 피고인 나오는 게 말도 안 돼요? 당연하지.

○위원장 서영교 여기 소관 기관으로……

○박형수 위원 대통령 나와.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곽규택 위원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대통령은 안 나오라는 법이 있냐고. 대통령 증인 신청할게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민전 위원 의결은 무슨 의결!

○박균택 위원 비교할 걸 가지고 비교하세요.

○곽규택 위원 뭘 의결을 해요, 의결을 하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우리 보고 통과시킬래 말래 이거예요, 지금?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러니까 뭐 조정할 게 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짠 명단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서영교 조회대 대법원장은 지금은 타협할 수가 없는 증인이고요.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다른 것 또 얘기하실 만한 게 있어요?

○김민전 위원 이것은 이때까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른 적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작년에도 일반증인으로 됐지요.

- 곽규택 위원** 기관증인으로 왔다가 못 돌아가게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영교** 아니에요. 작년에도……
- 김태규 위원** 작년에도 잘한 게 아니지요! 작년에 잘했습니까, 그게?
- 곽규택 위원** 기관증인으로 왔다가 이석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게!
- 김태규 위원** 그게 민주당의 폭도입니다, 국회의 폭도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 곽규택 위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일반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망신 주겠다는 거지.
- 김태규 위원** 왜 대법원장이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까? 대법원장이 잘못했습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 범죄자는 윤석열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냐고요.
- 위원장 서영교** 아니,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 받은 대통령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 뭘 말이 많아요!
- 김태규 위원** 윤석열 범죄자 하세요. 그런데 이재명도 범죄자 맞잖아요.
- 곽규택 위원** 그러면 대통령도 불러 봅시다. 대통령도 불러 봐, 그러면.
- 박형수 위원** 그러면 다 불러, 다 불러 보자고. 범죄자들 다 불러 보자고.
- 곽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 불러 내요, 그러면!
- 김태규 위원** 다 부르자고, 그러면!
- 위원장 서영교** 아니, 보세요. 대법관후보를 제청해야 하는데 대법관후보를 제청하기 전에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곽규택 위원** 담당 판사가 나오면 피고인도 나와야지!
- 김민전 위원** 다 부르세요, 다 불러.
- 김태규 위원** 다 불러. 윤석열 다 불러, 다 불러!
- 위원장 서영교** 일일이 전화하는 게 말이 돼요?
- 김태규 위원** 다 부르세요, 다 부르세요! 이재명도 불러!
- 곽규택 위원** 피고인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재명 피고인부터 불러요, 그러면!
- 박형수 위원** 다 부르자고, 다.
- 곽규택 위원** 이재명 피고인 불러 내라고요, 불러 내! 재판할 거면.
- 김태규 위원** 다 불러! 좋아, 얼마든지 다 불러! 이재명 불러!
- 김민전 위원** 이재명도 불러요.
- 곽규택 위원** 피고인 이재명부터 불러요!
-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대통령 공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공식 공문으로 한다. 거기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헌법 82조다’라고 대법원장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놨는데…… 대통령 공문에, 전자 공문으로 보냈어요. 여기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고 국무위원 부서가 있어요’라고 했더니 대법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것 아니에요.
- 김민전 위원** 부서한 사람들이 다 위원이에요.
-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김민전 위원 부서한 사람들이 다 위원이라고요.

○위원장 서영교 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떠들 거면 회의를 왜 해요? 위원장 혼자 짚고 말지, 그냥.

○위원장 서영교 내가 볼 때는 재제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김민전 위원 그것 자체가 위헌인데……

○김태규 위원 아니, 재제청을 왜 해요. 그게 지 권한도 아닌데!

○위원장 서영교 전자 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규 위원 재제청을 왜 요구하냐고요! 그게 대통령 권한이에요, 재제청이? 헌법에 재제청하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이와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박형수 위원 왜 재제청을 요구하냐고.

○김태규 위원 누가 재제청을 함부로 하래, 자기 권한도 아닌데!

○곽규택 위원 그러면 재제청을 요구한 사람도 불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규 위원 법에 근거도 없이 누가 함부로 권한을 행사해!

○곽규택 위원 이재명 피고인 불러내세요, 이재명 피고인!

○위원장 서영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 손 들어 주세요.

○박형수 위원 토론은 무슨 토론이에요! 일방적으로 다 정해 놓고 할 거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재명 피고인 불러내, 불러내! 아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던져 놓고 말이야.

○박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르지 말아요, 그냥.

○곽규택 위원 협의를 왜 해?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래서 아까 조정하시라고 시간 드렸잖아요.

○곽규택 위원 협의를 왜 해요!

○위원장 서영교 조정하시라고 시간 드렸잖아요.

○박형수 위원 조정하면 뭐 해요.

○김기표 위원 같이 합시다, 회의 줘.

○곽규택 위원 그냥 혼자 해요, 혼자. 법사위 혼자 하시라고. 법사위에서 재판할 거면 판사 하시고 다 해, 그냥.

○김기표 위원 회의 줘 같이 합시다!

○김태규 위원 이재명 부르면 나올게, 이재명 부르면.

○김기표 위원 회의 줘 같이 하자고요!

○김태규 위원 이재명 불러요! 범죄자 불러요!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앞으로 우리 부르지 말아요, 이제!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재명 부르라고! 범죄자 부르라고, 범죄자! 왜 재제청을 함부로 행사해! 그게 탄핵 사유야!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말조심하고 다니세요.

○김태규 위원 재제청권 법에 권한도 없는데 왜 함부로 행사했어!

○위원장 서영교 김태규 위원 말조심해요.

○김태규 위원 이게 탄핵 사유라고! 아시겠어요? 법 좀 제대로 알아요!

○위원장 서영교 공부 좀 하세요, 김태규 위원도.

○김태규 위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제발 좀!

○위원장 서영교 공부 좀 하고……

○김태규 위원 혼자서 법을 다 만들어, 법을 다 만들어!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서영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회법 37조입니다. 국회법 37조는 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국회 소관 사항입니다. 국회법 37조는 법원의 사무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관 추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추천위가 구성되어서 대법관후보를 추천했을 때 보통 11일 만에 추천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걸 제청하지 않고 209일을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27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어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209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청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대법관후보들에게 일일이 대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하게 했는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내부의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왜 혼자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낸 재제청 공문은 본 것인지도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공문이 있는지 알고는 있었는지.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대법원장이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전자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자 공문 안에는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다음 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라고 했는데, 전자 공문을 보거나 한 겁니까?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59. 긴급현안질의

(17시0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9항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이 공석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2명의 대법관이 공석이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와 잘 협의해서 김성수 후보가 제청이 되었고 그리고 국회 동의까지 다 얻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자리를 비운 노태악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수백 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청와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제청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전자문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5일 만에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긴급현안질을 하고자 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 손을 드신 관계로 순서대로 긴급현안질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기표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요청하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김기표 위원님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잠깐만요.**○위원장 서영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김동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위원장 서영교** 예.

○김동아 위원 제가 오늘 법원행정처 공보관 출석을 요청해서 법원행정처에도 다 얘기가 됐는데 오늘 무단으로 출석을 안 했더라는 얘기를 방금 전달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위원장실에도 말씀드리고 요청을 한 부분이어서요.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공보관이 오늘 꼭 출석했으면 좋겠다라고 김동아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저희 위원장실에서 공보관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일 전원합의 생중계가 있어서 그 공보업무를 준비하느라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내일 전원합의 생중계가 있는 것과 오늘 출석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10월 6일 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니까 그날 모든 것을 답변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이렇게 국회의원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전달된 줄 알았는데 안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처장님.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는 거지 그걸 마치 무슨 제삼자, 그렇게 얘기하듯이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문제를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기표 위원** 당연히 국회 관련 업무는 지금 행정처장님이 다 총괄 지휘하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처장께서 그래라, 안 그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 보듯이 합니까?

○**위원장 서영교** 우선 지적합니다. 대법원의 공보관이 이렇게 무례하게 안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 그게 있다 하더라도 공보관이 대법원장의 입장을 발표할 때 그 문장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접 쓴 사람인지, 왜 그렇게 발표하게 되었는지 등을 물을 생각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너무 당황스럽네요.

○**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다른 분들이 재제청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이 2023년 12월인데요 이후에 참석 행사의 관서업무추진비 총액이 2억 6000여만 원 규모로 파악이 됩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공관 인근의 프라이빗 룸 레스토랑, 스시 오마카세, 미술관 가이드 선정된 한정식집, 프렌치 코스요리 레스토랑 그리고 특급호텔 중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인원 뺑뺑이한 정황이 확인됐고, 대법원에서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 뺑뺑이한 자료들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도 취재가 되고 언론에서는 또한 상세히, 그 장소까지 가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배동 프라이빗 레스토랑 같은 경우 보면 2025년 11월 25일 날 재판연구관 형사신건조 오찬간담회에서 115만 2000원이 결제가 되는데 참석 인원이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가 3만 316원인데요. 이렇게 3만 316원으로 1원 단위까지 떨어지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이 식당은 전체가 룸으로 운영이 되고 식당 룸의 최대 수용 인원은 19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사 양보해서 서로 각자 다른 룸에서 식사하더라도 최대 33명까지만 수용 가능한데 38명이 동시 식사한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 5월 26일 조 대법원장이 국제심의회 전출 기념 오찬 간담회를 가진 한강이 보이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44만 6000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고 그때 인원을 15명으로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문 내역을 지금 언론에서 확인했는데 스페셜 코스 5개가 찍혔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명이 간 건데 15명이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 날 조 대법원장이 퇴직 법관들과 저녁식사를 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은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 60만 원을 결제했는데 집행내역서에 보면 식사 인원을 12명이라고 적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카드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와인 1병과 1인당 16만 원짜리 코스요리 3개가 찍혀서 실제로는 3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대법원은 많게는 4배 넘게 식사 인원을 부풀리고 있고…… 지금 대법원장이—어디인가요, 이번에 국제회의 열렸지요—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의 독립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말과 대법원장이 한, 대법원이 한 이 일은 너무나 모순되고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님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하신 대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위를 살펴봤더니 당초에는 기재부 작성 원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세부 자료로 참석 인원을 알려 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김기표 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는 기재하지 않다가 저희가 달라고 하니까 그때 부랴 부랴 기재를 했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기재를 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한 인원수에 대한 숫자를 알려 달라 그래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보면 굉장히 고급…… 물론 대법원장이 고급 음식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지금 답변하는 게 물론 수사가 되어야 완벽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어떻게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그때 부랴부랴 숫자를 적어 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는 그런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월급 받는데 진짜 고급 음식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왜 그렇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떼떼하지도 않게 숫자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비싼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이런 것, 저런 것도 터치 안 받고 국민

세금 마음대로 쓰는 그런 독립이 아닌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개 직원의 실수로 할 것이 아니고 먼저 반성부터 해야지요. 행정처장님 답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김기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치를 안 쓰겠다 이 말입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정부지침 어떻게 할 건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부지침을 저희가 어떻게…… 정부에서 정해 준 지침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지침대로 안 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초에는, 우리 내부 서류에는 지침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국회 측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표 위원** 저희 방에서 참석 인원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썄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기표 위원** 참석 인원 써서 오니까 우리가 참석 인원을 쓰는 것인지 알지 참석 인원 몇 명인지 써서 내라고 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처장님, 조희대 원장하고 함께 근무하시는 것 고통스러우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임명권은 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균택 위원** 그대로 임명만을 해야 하고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임명권이 아니고 임명 의무가 되는 것이겠지요? 동전의 양면처럼 당연히 임명을 거

부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재제청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임명하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도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재제청 요구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으로 제청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른 뜻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한 워딩은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 임명동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임명 거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임명 거부권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취지가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저희 측보고, 대법원장님보고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해석도 되고……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게 임명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까? 그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현재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받았고 임명 권한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재제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좀 알아먹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있고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재제청이 무슨 의미입니까?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제청의 전제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이 현재 상태에서 유효한지, 효력이 대통령의 제청 반려로 효력을 상실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나는 처장님은 매우 상식적이고 영민한 분인데 조희대 원장을 보좌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임명권자가 그 제청에 따라서 임명을 못 하겠다 다시 재제청하라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임명을 안 하겠다고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임명 권한의 일부를 행사한 것인데 조희대 원장은 도대체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임명권자가 임명을 않겠다고 했으면 임명 거부권인 것이고 새 사람을 제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임명권 문제를, 자기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무슨 법적인 근

거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1명은 임명하고 이 사람은 임명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재제청하라. 그런데 그게 권한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지금 헌법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조희대 원장은 과거에는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고 이번에는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뽑으려고 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104조 2항 임명권을 침해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 원장은 헌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 탄핵 사유 아십니까?

단순히 헌법정신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재제청해야 한다고 건의하신 건 맞지요, 조희대 원장에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릴……

○**박균택 위원** 아마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버텼다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은 끝까지, 내년 6월까지 임명 안고 공식으로 두겠다는 소신의 표현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도 최근에 언론, 어제 귀국해서 봤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참 회한한 원장님 모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술 위원** 노경필 처장님, 법원행정처는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손술 위원** 재제청하는 의견을 따로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의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손술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제청하는 방안…… 재제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손술 위원** 재제청하는 방안의 의견을 보고한 후에 다른 방안을 다시 제출한 겁니까,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 번에 제출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처음 청와대에서 공문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이……

○**손술 위원** 재제청하는 의견의 방안을 보고를 하셨는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손술 위원** 아니요, 아니요. 뜻이 무엇인지는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그것은 해석이 다른 거니까 묻지 않습니다.

재제청하는 의견을 보고를 하셨는지.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뜻에 따라서 이것을 반례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제청을 하는데 제청도……
- 손술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재제청하는 방안을 보고를 하셨는지.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보고……
- 손술 위원 여러 방안을 동시에 보고하셨는지……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동시에 보고드립니다.
- 손술 위원 재제청하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 손술 위원 방안,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안을 동시에 냈다고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안이요?
- 손술 위원 예. 재제청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신 건지……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요.
- 손술 위원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안을 내신 건지……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공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라는 그런 취지라면 우리는 제청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 손술 위원 제청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는 겁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 손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 손술 위원 의견을 언제 내셨어요? 언제쯤 의견을 내셨습니까, 검토해서?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한 2, 3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 손술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이후에?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지요, 부친상 전이지요.
- 손술 위원 부친상 전이요? 부친상이 8월 30일쯤인데요.
정확하게 하세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썄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친상……
- 손술 위원 정확하게 날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 손술 위원 첫 번째 보고를 했던 것이 언제인지,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것을 검토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 손술 위원 원래 후보 중에 내는 것도 검토했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방안이고요, 예.
- 손술 위원 법원행정처의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 손술 위원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 봤다’……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손술 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술 위원 아니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라는 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말한……

○손술 위원 처장님의 반응이라는 건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요.

○손술 위원 그런 제보가 있다는 건데, 그런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손술 위원 격노하지 않았냐?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저에게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또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손술 위원 지금 그러면 보도에 나오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그걸 따로 이야기…… 언론 보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제가 어제 귀국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걸.

○손술 위원 재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는 걸로 결론을 지은 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참모로서, 그 최종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권 한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손술 위원 대법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습니다.

○손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은 행정적으로, 매우 실무적으로 검토만 하고 의견을 냈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격노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고, 이런 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또 다른 검증이 있거나 보도가 있거나 하면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손술 위원 지금 대법관 공석이 오늘로 250일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송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공석이 된 지는 209일이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막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답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물어보시는데 9월 21일에 대통령과 차담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손술 위원** 차담을 한 다음날에 재제청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적인 부분에도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매우 황당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전날에 만났을 때는 이 재제청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손술 위원** 그러면 차담 때는 얘기하지 않고 다음날에 ‘재제청을 거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네요,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차담 때는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순방을 하고 출국한 상황에서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노려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걸 노릴 이유가 있습니까?

○**손술 위원** 이런 막다른 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년까지 공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만드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제청할 필요가 없다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제안하신 거군요. 그런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여러 안 중에, 재제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일 때 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보고 ‘이걸 철회하고 다시 하라’라는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위원장 서영교** 우리 사법부요? 아까는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사법부는 뭘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 죄송합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철회하고 다시 그 나머지 세 분 중의 한 분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된다면 이건 저희들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해석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손술 위원** 위원장님, 검토한 문건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반려라고 하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반려라고 하면, 우선 첫째로 대통령에게……

○**위원장 서영교**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무처에서 같이 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연히 그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저도 보고……

○**위원장 서영교** 인사실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인사총괄이 있습니다. 인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명칭은 인사실은 아니고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대법원장과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도 같이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읽어는 봤습니다.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보고서를 읽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검토보고서 읽어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도 읽어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 안 읽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인사에 관련된……

대법관 인사에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만이 관여를 합니다. 차장 이하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든 이 내용은 대법원 행정처장도 같은 의견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지금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청와대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무슨 뜻인지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재제청이라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그건……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그 공문을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보낸 공문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공문에 국무총리 부서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국무위원 부서는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인사혁신처장 부서는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위원인가요?

○위원장 서영교 그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인사혁신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이 손봉기 제청서를 어디로 보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가요?

○위원장 서영교 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디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혁신처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담당 국무위원급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위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걸 담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 국무위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대법원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법원장은 전자공문을 보기는 본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봤는데 그 따위 얘기를 합니까, 헌법 82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낸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입장문에. 단지 82조……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공식 문서로 한다. 헌법 82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되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쓴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다음다음 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명확해야 된다는 뜻에서 문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어? 국무총리 부서가 없었나 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바로 다음날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위원장 서영교 그런 뜻이 아니긴요. 그렇게 읽혔기 때문에 다음날 해명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위원장 서영교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부서 있거든. 공식 문서거든요. 전자문서거든요’라고 보내니까 그렇게 꼬리를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아직도 그……

○위원장 서영교 전자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기는 본 겁니까? 그리고 헌법 82조를 이야기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떻게 문서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본 사람이 그런 건 왜 씁니까, 그러면? 본 사람이 그걸 왜 씁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과정에서……

○위원장 서영교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해서 문서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전자공문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요? 저는……

○위원장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냐고요. 모두가 깜빡 속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부서가 없었는 줄 알고 그리고 공식 문서로 안 보냈는 줄 알고. 다 깜빡 속은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래서 청와대가 반박을 하니깐, 우리가 그 문서를 못 봤으니 우리는 속았고 청와대가 반박하니깐 바로 다음날 변명한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국민 여러분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가 아니라 ‘여기에 국무총리 부서 없거든. 공식 문서 아니거든’ 이렇게 내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 가고 질의 가는 것으로 하면서……

팩트 체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김기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공문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일시, 장소, 집행 목적,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 용도도 명확해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예요? 기재부에서 만들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 숫자 적으라는 게 없는데 국회의원이 숫자 적어 달라고 하니깐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서에 총 참석 인원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명, 대표……

○**위원장 서영교** 여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다 기재해야 되는데 그걸 또 빠져나가려고 1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김기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 이걸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질의시간이 끝났고.

저희가 저희 방에서 대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장 업무비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법원이 비공개 사유로 든 구체적 집행 목적 및 참석 대상자 식별정보를 제외한 1. 집행 일자, 2. 집행 금액, 3. 결제처(신용카드 가맹점명 상호), 4. 결제처 소재지가 시군구에 한하여 정리된 엑셀 파일 및 카드매출전표 사본 제출’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써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얘기하니깐 지금 그대로, 저는 자기들이 작성하고 있던 걸 그대로 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행정처장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인원을 적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원래 적어서 냅니다.

○김기표 위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행정처장께서 직접 쓰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았고요, 올해도 받았고요. 작년에도 법원은 잘못 써서 우리가 지적했고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임기웅변식 답변은 안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몇만 원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아주 고액이다 보니, 몇 명이 비싼 것을 먹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숫자를 여러 명으로 쓴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손술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검토한 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그 문건은 인사에 관련된 문건이라서 제출하는 데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에 관련된 문건입니까, 그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문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대법관의 제청에 관한, 인사에 관한 문서라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합니다.

다음,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를 출신 이성윤입니다.

처장님, 제가 앞서 위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처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참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심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꼬이고 이것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 헛갈리기도 하고 내가 이게 답변이 맞나……

예를 들면 박근혜 위원 질문에 대해서 무슨 반려설, 거부설, 3설 해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이분 임명하기 싫은가 보구나, 임명 못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시 재제청하거나 또는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설, 무슨 설 검토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처장님, 헌법적 관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법관 임명제청을 할 때는 미리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했지요? 그게 관행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윤석열 때는 그렇게 했지요, 대법관 제청할 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과거부터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했습니다, 윤석열 때는.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것 안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이걸 왜 안 했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노태약 후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명 안 되는 것은 거부설, 반려설 여러 가지 따지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없다, 본심을 좀 알아봤습니까, 왜 안 되는지?

처장님, 이게 올해 3월 노태약 대법관이 퇴임한 후부터 법사위만 오시면 법원행정처장들한테 숙제였어요. 제발 대법원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후임을 임명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든 둘 중의 하나 하라 했습니다.

7월 달에 취임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그때 전임 행정처장님한테, 처장님 안 계셨으니까 기우중 행정처 차장님한테 인수인계받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지금 이게 현안이다. 말씀 물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임명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장님도 취임한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님한테 임명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만히 합의가 돼서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분을 재제청 않는 이유는, 본심은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청와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최종 합의에 못 이르렀는데 본심이 뭐냐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희망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이 희망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성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됐고……

○**이성윤 위원** 그러면 임명을 지금 국민들께서 대법원장이 도대체 작년 5월부터 자기 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비판이 있어요.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대법원장이 마치 자기가 헌법과 국민 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헌법적 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것 비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조희대식 독단 헌법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끝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제청도 이렇게 됐으면 재제청은 더 협의를 해 주시지요라고 왜 건의를 안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제청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성윤 위원** 아니, 취지가 왜 명확하지 않아요? 일반인이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것 ‘이분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궤변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이성윤 위원 해석만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서류 작성할 시간에 청와대하고 협의했으면 훨씬 빨리 끝날 문제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청와대하고 협의했습니다, 계속.

○이성윤 위원 재제청 문제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것 어제도 말했지만, 많이 얘기 나왔지만 대법원장이 격노를 안 했다 그랬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수도 없이 임명해야 된다 했습니다. 임명 안 했어요. 그러면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대리로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본심을 모른다고 하니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자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 증인으로 채택됐다라는 결과는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봉기 후보 관련해서 당일 날 12시에 이름을 얘기하고 2시에 인사혁신처로 서류 보냈다면서요? 손봉기 후보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4명 모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금 마치 이성윤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다 협의를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지요. 팩트가 아닌데 저희가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팩트체트를 했는데요. 손봉기 후보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없던 후보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떻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12시에 이름이 처음 나오고 2시에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제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계속 요구하셨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선택은 헌법상 제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참모로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저에게도 잘 해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요 최대한……

○**위원장 서영교** 저에게도 잘 해결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기류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잘 해결하십시오’, ‘잘 애쓰십시오’라고 하면 ‘예, 잘해 보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에게도.

그것은 처장님만이 아니라 그전하고 다르게 그전에는 ‘대법원장님에게는 말이 안 먹힙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셨고 어느 시점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보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통도 했고 제가 이것을 해결 안 되게 할 것이 아니라 해결되게 해야 하니 서로,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대법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법관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에요. 누구의 의무 위반입니까? 대법원장의 의무 위반이에요. 헌법의 의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헌법 27조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에게도 서로 잘 얘기했잖아요, 잘 해결해 보겠다. 그 얘기가 됩니까? 뜻이 같으니까 했던 얘기 아닙니까.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경기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 국가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헌법에 따라 사법부는 구성되지요. 맞지요,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헌법이 보장하는 법원의 구성 원리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대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대법관의 임명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부의 숙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헌법적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행정처장님, 한 명의 법관인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저는 잘……

○**김남희 위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 나라는 없고요. 사법부 구성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데 각국은 의회, 대통령, 독립된 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미국은 연방대법관을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내각의 지명에 의해서 임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남희 위원**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헌법이 규정하는 별도의 선출기구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데 프랑스의 최고법원 법관을 임명하는 사법평의회는 대통령과 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의회가 이 선출기구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어느 나라도 개별 법관에게 국가 사법부의 구성권을 맡기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최고법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최고법원 구성에 반영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헌법 조문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인 제청권을 행사했고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 무시했습니다. 헌법 내용 너무 잘 알아야 하는 대법원장이 헌법 조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를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거부한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처장님, 대법원장님이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 이 제청이 확실히 반려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김남희 위원**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된 상고 사건이 4만 건에 육박합니다. 2024년 민사 본안 사건 상고심이 1만 5000건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고요. 상고심 형사 공판 사건은 2만 5000건으로 18%가량 증가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이후에 사건 배당·처리 건수, 미제 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남희 위원** 대법관 공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분석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마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어떤 피해를 국민에게 입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으면 이제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법부의 입장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집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삼아서 사법부의 독립도 무너뜨리는 그런 대법원장, 우리나라 국민은 필요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 무너뜨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행정처장님, 건의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사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의겸 처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후속 질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두 가지, 2주 전 내지 3주 전에 건의를 했다. 건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와대의 공문이 반려를 한 건지 아니면 반려가 아닌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래서 반려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제청을 할 방법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안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반려를 한 거라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을 때 첫 번째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두 번째로는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가운데서 한 분을 추천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언론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왔어요.

세 번째는 뭘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의 권한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단 제청이 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원장대리 김의겸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청을 했으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일단 국회 동의……

○위원장대리 김의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국회로 가서 동의 절차를 받아라?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시지만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이 반려는 위법하다는……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거기까지 거친 뒤에 그때서야 재제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좋습니다. 반려를 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반려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 해석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러면 여기 어디에, 반려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반대로 오히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되고 문서가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해서 내용이 보충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본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그러면 대변인이 이야기하거나 다른……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언론이라든가……

○위원장대리 김의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거기에는 뜻이 명확하지가…… 반려한다는 말이 전혀,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반려’라는 단어가 없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대리 김의겸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다음 질의하면서 확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 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아니구나, 김용민 위원이지군요.

○김용민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의겸 죄송합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들 질의를 많이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의겸 죄송합니다.

○김용민 위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처장님이시지요.

먼저 이것 좀 묻겠습니다.

아까 업추비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실태조사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릴 생각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범법행위라든지 또는 징계 사안이 된다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저희 국회 법사위에 따로 한번 보고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김용민 위원 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니깐 그냥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내일 전원합의체 한다고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이게 보니까 내란사건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건희 사건도 있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전원합의 안건으로 올려졌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내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면 곧 결론이 난다라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통상 전원합의체 한 번 정도 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제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김용민 위원 이 사건을 묻는 게 아닙니다. 통상 물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속행이 될 수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다시 가 볼까요?

헛갈려요, 지금. 국민들께서 헛갈리십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얘기하는데, 다 좋습니다. 대법원장 입장이 뭐예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김용민 위원 그것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본인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라도 오셔야지요. 대법원장 안 나오게 막으실 거면 물어보고라도 오셔야지요.

대법원장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딱 들어 보니까 대법원장의 생각을 법

원행정처장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온 국민이 몰라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재제청 거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의 수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잠깐 제가 경우의 수 부분 오히려 나눠 볼게요.

이것 재제청 요구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장은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이 검토를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신 것은 아마도—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국법상 행위인데 문서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선 그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 얘기가 지금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제청 요구를 아예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썄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재제청 요구 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봤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도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저희들이 뭘 고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처장님도 몰라요. 지금 온 국민이 다 답답해요. 대법관 임명이 안 돼 가지고 재판이 지연되고 지금 법원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고 온 국민들이 불편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하게 나왔어요. 재제청 요구를 한 거다,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그것도……

○**김용민 위원** 그런데 왜 대법원장 입장이 명확하지 않냐고요? 재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건지, 재제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 왜 그것조차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대법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나와서……

○**김용민 위원** 어디서 얘기하려고요?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라도 틀고 얘기하세요, 국민들이 보시게, 직접. 공보관 통해서 하지 말고.

가서 건의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얼핏 얘기하신 게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국회에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입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회는 그냥 무조건 다 동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오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동의안 표결해야 되는데 그 무의미한 절차를 왜 국회한테 뺏으라

고 하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재제청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국회한테 그 무의미한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겁니까? 국회에 대한 존중이 1이라도 있습니까? 국민에 대한 존중이 1이라도 있어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김용민 위원**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그 안으로 삼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안 중에 하 나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학설과 또 현재 나와 있는 현재라든지 저희들의 판례라든지 또 언론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규정하시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판단 중에 어떤 게 가장 맞습니까? 재제청은 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된다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의겸**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처장님, 대통령실 공문이 8월 28일인데 문구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법관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너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답변은 공문 취지가 불명확하다, 제청 거부로 해석해야 될지 제청 철회 요청으로 해석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한규 위원** 제청 거부로 해석하게 되면 재제청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추천위를 재구성하거나 이전에 추천한 3명 중에 다시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재제청이, 그런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일단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재제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한규 위원** 만약에 제청 철회를 요청한 거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제청은 유효하니까 재제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명확한 것을 해석 못 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9월 22일에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명확히 거부라는 표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대변인이 논평을 했거든요. 부족합니까? 공문을 보낸 대통령실에서 취지가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부족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국법상에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대변인실의 논평을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 표시하다고 하면 그러면 재제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때부터 아까 말씀 그 세 가지의 방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다시 재제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학설 열심히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규정에 연혁적인 이유를 죽 찾아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3공화국 헌법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제3공화국 헌법에는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72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87년 헌법에도 이 규정이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해석상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없어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추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공화국·4공화국 헌법을 연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해석이 뭐가 가능합니까?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무의미하게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내서 대통령이 그때서야 임명 거부하면 그때서는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재제청하실 겁니까?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또 재제청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김의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때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한규 위원** 불필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명확하게 반려의 의사 표시를 했고 이분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9일 날인가요? 처장님께 이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이것 파국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어떻게 임명 동의를 하느냐? 당연히 거부할 텐데 이런 파국이 올 줄 알았냐?’라고 했더니 처장님이 ‘그런 것을 예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예상하시는데도 저희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 대통령이 그러면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 표시를 공문으로 해야지만 대통령의 의사를 받아들이겠다 이겁니까? 대변인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사를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공문으로 명확하게 했고, 우리는 명확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화자가 명확하게 그 의사를 설명했는데도 부족해서 공문으로 꼭 보내야

된다 이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도 역시 세 가지 학설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로 하여금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면 그때는 재제청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도 대법원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도 전혀…… 법원행정처라는 게 행정을 담당하고 대법원장에게 이런 인사총괄심의관을 거쳐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한규 위원** 대법원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도록 그렇게 자문하는 위치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법원행정처가 뭐 하러 있습니까?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 대법원장의 뜻은 뭐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님의 뜻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조만간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결정도 하지 않고 문서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거기 보시면 헌법상 근거와 사유를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김한규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지 사유까지 내야 된다 이겁니까? 대통령이 대법원장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설명이지 않겠습니까?

○**김한규 위원**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이 그것은 임명……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들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행정처장님하고의 질의답변으로는 저희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꼭 모셔서 질문을 할 테니까 처장님은 명확하게 대법원장이 답변을 준비하셔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 오시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처장님, 22일에 발표된 원장님의 입장문, 처장님은 언제 처음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발표 직전에 봤습니다.

○**김의겸 위원** 정확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10시 반이나 11시 그사이에 있지 않을까……

○**김의겸 위원** 10시 반에서 11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요지는 하여튼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발표 3주 전에 네 가지 방안, 1 플러스 3 방안을 인사총괄심의관이 중심이 돼서 안을 올리셨다 그러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3주인지는 정확하지……

○김의겸 위원 세 가지 안은 상식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안은 좀 의외인데, 그러면 도합 네 가지 안이 동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안이 먼저 보고가 된 뒤에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가 추가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동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의겸 위원 동시에 네 가지가 보고가 됐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가 다 남아 있으니까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의겸 위원 어디에서…… 아까 김한규 위원님도 읽으셨지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 이 말에,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손봉기 후보가 여전히 제청에 유효한 후보로 살아 있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지금?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첫 번째 안으로 가면 그런 의미……

○김의겸 위원 첫 번째 안으로 가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살아 있는 후보이니 다른 후보를 제청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그 말을 직접 들으셨지요, 원장한테, 처장님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그 말을 처장님도 직접 들으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안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는……

○김의겸 위원 그건 22일에 들으셨습니까, 그 전에 들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김의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국무위원의 부서로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문서로 명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삼권분립이니 대법원장의 어떤 결정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어떤 말씀……

○**김의겸 위원**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법원장의 결정사항도 판결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문서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의견 표명이거나 글씨 그 부분은……

○**김의겸 위원** 아니지요.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도 문서로 왔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견도 그에 맞서는 정도의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청와대에……

○**김의겸 위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문서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런데 아마 최종적 결론은 공보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대통령은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를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공보관 통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첫 번째 입장문, 짧은 입장문, 대법원장이 혼자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처장님하고 상의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원장님께서 인사총괄에게 지시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제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의겸 위원** 청와대에는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전에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김의겸 위원** 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고 청와대에, 그러면 최종 발표하기 1시간 전쯤 통보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게 정확하게…… 먼저 대법원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제 방에 들르셔서 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대충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여쭙봤더니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재제청할 수 없다라는 취지. 그래서 일단 제가 빨리 청와대 측에는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정확한 문구는 아마 대법원장님께서 인사총괄에게 지시를 하셔서 가지고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런데 아까 처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총리의 부서 문제 등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말씀하신……

○**김의겸 위원** 그런데 대법원장님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 온 국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줄속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최종 공표되기 전에 처장님도 한번 보셨으니 의견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의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대법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하고 상의해야 합니까? 제청할 때 청와대하고 협의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건 관례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관례인데 임명을 누가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임명은 대통령이 하십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를 지명합니까, 아니면 제청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청하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들은 대법관추천위에서 추천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잘 협의해서 1명을 제청해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이제까지의 관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요청하는 사람을 제청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견 일치를 누구한테 맞추는 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의 권한이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권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청권이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을 메워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며칠 동안 대법관 공석을 만들어 놔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 공석을 200일 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이에요.

대법원장의 의무는 뭐예요? 추천위가 추천하고 보통 며칠 만에 제청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한 보름, 한 15일 내외에서……

○위원장 서영교 11일 만에 제청됩니다, 평균. 그런데 대법원장은 제청을 200일 넘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빠르게 합니까? 비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한테 임명받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전 대통령이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받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청 과정에서 조율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1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싫어서 고집을 피우고 200일을 넘게 비웠어요.

헌법 27조는 내용이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떠올 수 있으면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27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한번 읽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읽을……

○위원장 서영교 예,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온 국민이 들으실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원장 서영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대법관 자리를 200일 넘게 비워 놔으니, 제청을 하지 않았으니 비웠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청하지 않았으니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장 서영교 국민이 신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의무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로 그것을 방치하는 게 그게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법원장이 그걸 방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무슨 지속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노경필 대법관도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하는 날 대법관으로 있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7만 페이지는 다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연구관이 정리해 준 것만 봤다고 이야기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기록도 저는 일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하여튼 벌써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연구관들이 보여 준 자료만 보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썽요.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건 모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재명 대선후보를 그때 파기환송 시켰고 고등법원이 바로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 조희대·노경필입니다. 그리고 대선후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대선후보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경필 대법관, 질의합니다.

왜 대법관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건 해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딱히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십니까?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서 후보자들을 추천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동의하면 다시 추천위원회 꾸려서 다시 추천할 수 있다, 일명 사퇴 중용,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퇴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게 사퇴 중용이 아니면 어떤 게 사퇴 중용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하신 대로 200일 가까이 대법관이……

○**위원장 서영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200일 가까이 대법관이 제청되지 않고 있는 교착 상태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대법관후보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청을 하는데 받아들이시지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합의가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서영교** 협의되는 것으로 제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위원장 서영교**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쌍방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김성수 대법관은 원만히 합의돼서 취임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은 그래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취임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과기환송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절차를 위반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했는지 꼭 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아직도 못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전화를 받은 분이 마음 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과도……

○**위원장 서영교** 그게 어떻게 마음 상한 겁니까? 법원조직법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법관후보를 4명으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마음 상하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고 여러분은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 하나를 제왕처럼 모시기 위해서 법원조직법 위반까지 불사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키지 않고, 그 허락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시 하나 더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쓴 입장문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첫 번째 것은 봤습시다만 두 번째 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몽골로 가기 전에 그 입장문이 나온 거였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새벽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두 번째 입장문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첫 번째 입장문 봤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첫 번째 입장문 직접 썼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장님께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대법원장이 직접 쓴 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님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님이 작성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작성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최종적으로는 확인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이 작성했고 대법원장이 제안한 겁니다.

거기에 헌법 82조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문서로 한다. 국무총리의 부서가 필요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말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장 입장문에 그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문서로써 합니다’ 해서 끝납니다.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로 끝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쓴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글썄,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위원장 서영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문서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 헌법 조문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 조문을 쓴 이유는 대통령이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런데 그걸 왜 씹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문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문서 내용은 명확하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아는데.

제가 그날 전화드렸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제가……

○위원장 서영교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무슨 말을,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사람이랑 다 물어봤는데 깜빡 속았습시다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요. 대통령이 공식 문서로 하지 않고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했나 보다. 그리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나 보더라고 전부 다 깜빡 속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았으면, 그렇게 잘 이해를 못 하면 이걸 왜 쓰셨나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봤군요? 나중에 봤지요, 그 문서를?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위원장 서영교 혹시 재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의겸 위원님, 손슬 위원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처장님께서 대법관 제청할 때 청와대 쪽과 협상 파트너이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래서 이번에 4명 후보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오고 갔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앞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거 말씀하시는…… 김성수 대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의겸 위원** 아니요, 이번에 손봉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 앞에 말씀하신……

○**김의겸 위원** 예, 손봉기 후보를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청와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런데 아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건지 반려를 하는 건지 그 뜻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의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장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심의관이 보고서를 네 가지 안을 올렸어요. 그리고 처장님도 보셨는데 다른 대법관님들도 보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님들은 보시지 않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원장님, 처장님, 인사심의관 이렇게 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제가 왜 이걸 의문을 갖느냐 하면 원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인사총괄심의관님이나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해 오신 분이요 판결문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와 파장효과를 가져올지 항상 고민하시는, 언어를 다루시는, 법률적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인데 ‘문서로 한다’ 이 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줄속적으로 다른 분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한 거 아닌가, 처장님도 발표되기 한 시간 전쯤이나 보셨을 정도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형식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걸, 대법원장님의 말씀이신데 그것도 정말 유례가 없는 이야기고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형식을, 제가 알기로는 간사한테 보내서 간사가 기자들끼리 모여 있는 단독방에다가 올린 거예요.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카톡방에 올렸다고, 단독방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김의겸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간사한테 줘서 간사가 공표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이 그 공표를 해도 사안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건데 그 방식은 처장님이 건의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김의겸 위원**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공문으로 청와대에 다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건지 했는데 최종 결정이 공보관을 통해서 하는 걸로 돼서 저는 공보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의겸 위원** 그러면 그건 원장님이 결정하신 거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의겸 위원** 첫 번째, 이게 자진 철회를 하라는 건지 여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 이 문장에서 자진 철회를 하라는 뜻으로 읽힌다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건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김의겸 위원** 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하고.

마지막 문장이었나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연결이 잘 안 돼요. 말하자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걸 자진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손봉기 후보는 여전히 유효한 후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 원장님 생각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실에서 온 공문에 헌법적 근거를 뭐라고 써 갖고 왔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 조문과 법원조직법 조문을 기재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헌법 104조, 법원조직법 41조 다 넣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같은 내용입니다, 두 조문은.

○**위원장 서영교** 다 넣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는 제청과 동의, 임명한다는 아까 봤던 그 조항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거기에 맞춰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보내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딱 그 얘기에요. 대법원장이 ‘나 이거 국무위원 부서가 없고 국무총리 부서가 없고 국무위원 부서가 없거든. 대통령의 행위는 공식 문서로 해야 돼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알리고.

두 번째,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41조에 의해서’라고 명확하게 넣었는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사유에……

○**위원장 서영교** 마치 헌법과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내용이 없나 봐’ 지금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무슨 사유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을 요구한다,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는 사유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통령에게 뭘…… 대법원장이 제왕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제왕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의 제왕은 대법원장이에요? 그렇게 말도 못 하고 말도 못 붙이고 꿈쩍도 못 하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임명동의안 보낼 때도 사유는 기재하십니다.

○**위원장 서영교** 임명동의안을 보낼 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분이 왜……

○**위원장 서영교**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추천위원회가 전부 다 추천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다고 다 넣어서 추천된 거 아닙니까, 검증 다 되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데 그분을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 반대한 사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협의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왕입니까, 대법원장이? 그래서 대통령도 파기환송하려고 했고.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만들거나 짜맞추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에둘러서 처장님 통해서 하거나 공보관 통해서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장님, 2024년부터 대법관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대법관 격려금 받으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 예, 받았습니다.

○**손솔 위원** 한 달에 200만 원 상당?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평균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많을 때는 300, 350도 받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50은 아닌……

○**손솔 위원** 100~150만 원 더 받을 때가 있다고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처장님은 이 200만 원을, 평균 200만 원을 연구관에게 나눠줬습니까, 매달? 2024년부터 항상?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관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저도 쓰지만.

○**손솔 위원** 연구관에게 줬을 것이라고 기우종 행정차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연구관만 주겠습니까. 어떻게 연구관만 딱 주겠습니까.

○**손솔 위원** 이 격려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손솔 위원** 2022년에 3억 5400, 2023년에 3억 5250, 2024년에 3억 7450, 2025년에 3억

5900, 총 14억가량 됩니다. 이 돈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현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대법관 시절에 이 격려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셨습니까? 이 격려금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대법관을 통해서 연구관에게 줬을 것이라라고 추정만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중요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법관은 평균 200만 원씩 받는데 법원행정처장은 평균 300만 원씩 받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2026년 7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 하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올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받았습니다.

○손솔 위원 이 감사원 결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억이거든요. 올해 관련된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더라고요.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격려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2026년 7월부로 지급방식을 바꿨다고 저희 의원실에 얘기했는데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감사원 지적에 맞춰서 지급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손솔 위원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실적과 업무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솔 위원 대법관이 받는 돈이요, 특정운영경비, 지원경비로 이미 매달 512만 원 받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신용카드로 받습니다.

○손솔 위원 예, 현금 30만 원에 카드 482만 원 신용카드로 받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게 대법관 일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거기에 격려금이 매달 200만 원씩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관을 대법관 통해서 주지 않고 연구관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대법관에게 현금을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격려금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이었고 그것이, 격려금 지급된 것 자체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손솔 위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이고 격려금을 그런 방식으로 주면 안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에게 주려고 대법관에게 줬다’가 기우종 차장의 변명이었고요. 그런데 연구관에게 매달 줬는지 확인되지 않고 처장님도 매달 연구관에게 준 것은 아니라면서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연구관에게도 주고 또 직원에게도……

○손솔 위원 매달 연구관에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달 어디에 썼습니까, 그 200만 원을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래……

○손솔 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명확하게 바뀌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바꾸었습니다.

○**손술 위원** 금년 7월부터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손술 위원**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격려금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손술 위원** 대법원에게 현금 쌈짓돈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512만 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 쌈짓돈이 왜 더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격려금의 형식으로 할 거면 연구관에게 줄 거면 연구관에게 직접 주고 그 항목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달 512만 원도 받는데 현금으로 평균 200만 원씩 대법관이 항상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하늘 위에 계신 신도 아니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놀랍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더 드릴까요?

○**손술 위원** 아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답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금이 지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고 있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격려금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대법원 어디에 격려금이 근거가 있어요?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산지침 어디에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뭘 보고를 해요?

어디에 있어요? 격려금을 준다, 현금으로 준다. 현금으로 돈 주는 게 왜 문제가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격려금……

○위원장 서영교 아니, 어떻게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특정업무경비 받아요, 안 받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업무추진비 받아요, 안 받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업무추진비는 행정처장만 받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격려금을 왜 받지요? 현금으로 격려금을 준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아니, 어떻게 뻔뻔스럽게 격려금을 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침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침이 잘못됐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지침이 잘못돼서 그 지침을 기획예산처의 지침과 동일하게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아까도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인원을 쓰지 않는 것인데 인원을 쓰라 그래서 인원을 썼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구체적인, 그 지침에 참가 인원 전원의 숫자를 쓰라고는 기재돼 있지는 않다고……

○위원장 서영교 누구랑 밥 먹었는지 정확히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50만 원 이상이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장 서영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세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람 숫자……

○위원장 서영교 집행 대상이 사람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집행 대상과, 밑에 보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주된 상대방이 누구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중에 대표 한 명만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영교 어디에 대표 한 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판결 내립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부부처와 전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디 정부부처가 동일하게 합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해서 여러분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숫자를 7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해 가지고 10명이 먹은 것을 38명이 먹었다고 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사죄하면 끝납니까? 나랏돈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부부처에 지침……

○**위원장 서영교** 어디 정부부처가 동일하게 한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뭘 보고를 합니까? 틀린 거지.

여러분은 치외법권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른 정부부처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원 예산집행지침 기타운영비 세부규칙,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와 있어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어디 현금으로 주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에 어디서 요즘 현금으로 주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싹짓돈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원도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
니다.

○**위원장 서영교** 누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지적하지 않았습
니다.

○**위원장 서영교**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제일 모범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방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
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전부 다 처벌받고 있는데 왜 여러분만 아
닌 거지요? 왜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장님, 아까 저희 의원실에 내면서 인원을 썼
다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는 인원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집행 일자, 집행 금액, 결제처, 결제처 소재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
니
까 대답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고 만약에 실무자가 그 답변을 하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
을 해 보십시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저는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이게 반려가 났
니, 안 났니—손봉기 후보인가요?—손봉기 후보가 살아 있니, 아니니 이것은요 약간 말장
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나면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자 안 돼, 다른 사람 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판할 하실 때 무슨 사유, 무슨 사유를 다
법조인들이 그것 배우고 합니다. 재판할 때도 이게 실질 사례인지 형식 사례인지 다 하
지요. 그러면 재판할 때도 심지어 민사, 일반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법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이유가 없단느니 그다음에 이것은 철회가 됐니, 안 됐니 자기들이 따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기준에 보면 불분명하니까 다시 해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것이 저는 고시 패스한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로 ‘이게 도대체 철회가 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얼마나 지적 유희이고 청와대를 무시하는 행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웃긴 일이에요.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자 안 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려가 됐니 이런 것을 따지고 있으면 그것은 조금 웃긴 것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명권자가 손봉기 후보자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임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 유를 대법원장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합니까?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임명권자가 나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것 다시 하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 법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핑계로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철회가 됐니 안 됐니 따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청와대 입장은 명확합니다. 손봉기 후보자 말고 다른 사람 하세요잖아요.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 설이 어떻고 저 설이 어떻고, 1안은 어떻고 3안은 어떻고 이릅니까? 다시 하셔야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궁금해하지만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알아야 정치적으로 해결하든 법적으로 해결하든 탄핵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정확한 뜻을……

○**김기표 위원** 정확한 뜻을 가지고 와야 풀고 해야 될 것……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뜻을 명확히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도 얘기해야 뭔가 풀릴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그것을 해 오세요. 법원행정처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장이 한없이 잘못하고, 제가 SNS에 ‘요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법원장 그리고 정치권에서 또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것을 행정처에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설이 어떻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의겸 감사님.

○**김의겸 위원** 처장님, 제가 처장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보는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 이 말에서 반려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을까, 도출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아까 처장님은 말씀하시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 제청과 임명의 과정에 그것을 협의라고 하든 협상이라고 하든 양 당사자는 대법원과 청와대인데, 원장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파트너인, 당사자인 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삼자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대법원장에게 끼치지 않는다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것 아닐까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금 한 시간 넘게 보면서 처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나온, 억지로 짜낸 제 생각이에요.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논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고.

굳이 문서주의를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처장님이 청와대하고 많은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왜 거부를 하는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뜻을 전달받으셨을 테고 또 대변인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마치 그 이야기는 못 들은 척 귀를 막고 문서만이 유일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정말 거꾸로, 처장님이 한 시간 전쯤에 청와대에 직접 가지는 않으셨을 테고 전화로 하셨겠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그 전화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사실을 통보해 드리는 겁니다.

○김의겸 위원 아니, 청와대가 보낸 문서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것은?

○위원장 서영교 법적 효력이 없네요.

○김의겸 위원 법적 효력이…… 아니, 약간 좀 얼추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서로 쌍방 계약 당사자라고 하면 한쪽이 뭘 보내면 또 그에 합당한 문서가 오고 가고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지금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누가 법을 많이 알고 또 꼼꼼하게 기발한 논리를 만들었느냐 이런 다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인사총괄심의관이 네 가지 안을 만들었으면 이런 안이 있습니까라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절차도 담기는 게 꼼꼼하시고 명석한 법관들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서 부결이 났을 경우는 그때는 재제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의겸 위원 예. 그러면 말하자면 청와대의 리액션을 생각해서 그다음 후속조치를 생각하신 건데 각각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는 총괄심의관이 보고가 없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김의겸 위원 담겨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의겸 위원**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안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지……

○**김의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관리하지 않은 걸로 본다, 이 이후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청와대에 문서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공표하는 방법도,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보고서에……

○**김의겸 위원** 그랬을 때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것까지는 아마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김의겸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솔 위원** 위원장님, 감사원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손솔 위원** 제가 감사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주의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치할 사항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정액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건데 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처장님의 해석이거든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만약에 현금 지급이 문제였다면 주의 촉구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손솔 위원** 주의 정도여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에서 최소 매달 4년 동안 이거를 준 것에 대해서 자체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걸 정기적으로 월정액으로 줬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손솔 위원** 이 조치할 사항을 가지고 현금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건 주의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처장님이 되게 관대하게 선해하시는 거고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런 책임 있는 자세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손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꼬리를 잡으면서 현금 지급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맞게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기우중 처장이 저번에 나와서 ‘이것이 문제이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대법관을 통해서 연구관에게 줬습니다. 연구관에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관에게 준 거는 소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랑 기우중 처장이 얘기하시는 거랑 내용의 결이 다 다르고 이게 변명의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감사원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 그런 진정성과 책임성을 이 자리에서는 보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원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선된 사항이.

○**손술 위원** 개선된 사항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손술 위원** 그건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정말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답이 안 왔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다만 대법관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달 512만 원의 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특수운영경비, 특정운영 경비.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법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20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이해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의 격무에 고려해 보면 그 정도의 격려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술 위원** 그 정도는 지급될 수 있다? 매달 512만 원이 특정운영경비로 있고 특활비가 폐지됐고 격려금으로 그걸 돌려서 하는 이런 방식이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특활비가 왜 폐지됐습니까? 쌈짓돈으로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회해서 이렇게 격려금으로 받아요? 그걸 연구관에게 줬다고 변명하고? 연구관에게 매달 준 것도 아니고?

지침이랑 감사원이랑 협의된 거는 실무적인 얘기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애초에 격려금을 매달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대법관이 본인들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구나, 우리랑 전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대법관들이셨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예산집행이 가능한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현금으로 받는 건 괜찮습니다. 감사원과 협의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앞으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진실성과 어떤 책임성을 보여 주고 계십니까, 처장님은?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두고 이 정도는 적정하니까 이 정도만 하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알겠습니다.

○**손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마지막, 제가 체크합니다.

떡위 봐 주세요, 특정업무경비.

여러분의 그 잘못된 의식을 지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 지급되는 거 외에 특정업무경비로 대법관에게 6144만 원씩 지급됩니다, 1년에. 그게 아까 손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법관실 배정 경비를 960만 원이 또 나가요. 6100만 원, 960만 원도 나가는데 거기에 현금을 지급하는 격려금이 당연히 오는 거고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저게 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과거부터 지급돼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대법관은 누구예요? 대법원장은 누구예요? 지금 대법원장은 누구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조희대 대법원장이십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누구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서 지침을 고쳤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못된 거잖아요. 지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몇십만 원만 횡령해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박근혜에게 격려금이라고 돈 줬다가 전부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정말 아주 잘해서……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럴 때는 가능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주고?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판부의 업무는 매달 정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위원장 서영교** 매달 정기적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래서 아까 6100만 원, 960만 원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다시 기타 운영비를 전용해 가지고 현금으로 격려금이 나갑니까? 그리고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처벌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지 96만 원을 38명이 먹었다고 해 놓고, 그거 다 거짓말로 해 놓고 ‘국회에서 인원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아주 실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은 탄핵으로 무기징역입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이 조작수사 하고 조작기소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파기환송으로 날리려고 했지만 민심은 이재명을 살려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노경필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법관 임명에서 대통령의 협의사항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식 공식 문서를 통해서 보냈는데 언론에다가 기자들 브리핑 방에 올렸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갔더니 대법원장은 연가를 냈다고 사라졌어요. 비겁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 자리가 빈 거는 250일째, 제청이 안 된 게 2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요?

저는 여지껏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정치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법원행정처장도 여러 번 만났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여러 번 만났고 대법원장도 만나러 갔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잘해 보겠습니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그렇게 역정을 내는 걸 처음 봤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게 진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법원은 정말 가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온갖 현금도 격려금도 그리고 오마카세도 난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경필 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4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조희대	대법원장	10. 6.(화) 대법원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상태 초래 관련
김정훈	변호사	10. 8.(목) 법무부	검찰 수사기록 관리 D-Net 관련
신동원			외국인보호업무 관련
김종욱			외국인 배달라이더 관련
정영부	한국이민재단이사장직무대리		광주SRF 중재 관련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호열	청정빛고을(주)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사장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포스코그룹 회장)		1심 판결에 따른 임금채불 문제 해결 및 피해노동자 구제 확인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백성현	천안교도소장		교정시설 탄약관리 부실문제 관련
김문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참고인(10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김경호	변호사	10. 6.(화) 대법원 10. 8.(목) 법무부	재제청거부 검찰 수사기록 관리 및 D-Net 관련
김지원	배달라이더	10. 8.(목) 법무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심각성 청취
이상현	변호사		외국인보호위 제도적 문제 관련
봉지욱	기자		검찰 수사기록 관리 및 D-Net 관련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동조합위원장		임금채불노동자 피해내역 및 진정, 민사소송 등
윤성원	전 국토부차관	10. 8.(목) 법무부 10. 12.(월) 감사원	검찰 조작기소 관련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노은재	전 국정원 기조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이세현	한국조폐공사 차장	10. 12.(월) 감사원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용민 김의겸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솔 윤상현 이성윤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취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이병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해양경찰청

청장 하만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